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학박사 학위논문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연구

- 공공미술 기금 사용 방안을 중심으로 -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류 선 정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연구

- 공공미술 기금 사용 방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안 동 만

이 논문을 공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류 선 정

류선정의 공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국문초록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연구
- 공공미술 기금 사용 방안을 중심으로 -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미술작품 제도는 도시민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만든 제도로서, 이 제도에 의거해 설치한 미술작품이 국내 공공미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설치 미술작품 대다수가 공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예술적 가치가 떨어지며, 그래서 제도의 취지에 잘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011년 개정을 통하여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방식대로 건축대상 부지에 미술품을 설치할 수 있지만, 건축주가 원할 경우 미술품 설치비의 70%를 문화예술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기금 출연 건수가 기대에 못 미치며,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미술 사업은 단 1건이다.

현재까지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는 필요·부족 지역에 대한 분석 없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상당수 시민이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한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개선 효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4개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술품 설치 빈도가 적어 향유도가 떨어지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감상자의 접근성과 감상 용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공간의 선정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은 작품 설치 등으로 인하여, 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해 모금된 기금이 제도

의 원 취지인 도시민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로 기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건축물미술작품 심의·관리 또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획과 설치, 사후관리가 편리해질 것이다. 또한, 구 단위로 부족지역과 충분지역을 분석하여 부족지역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사용한다면, 도시경관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주민의 문화향유가 적은 곳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활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기금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시한다. 첫째, 심의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원으로 해당 도시의 공공시설 담당자, 도시계획·설계 담당자, 구·커뮤니티 대표를 위촉한다. 둘째, 미술품 제작·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와 행정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등 기금 사용 항목을 구체화한다. 셋째, 미술품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시민의 접근과 도시경관의 조화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넷째, 기금에 의한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적합한 공공미술의 형태를 제시한다. 다섯째,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에게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미술 전문가를 둔다. 마지막으로, 공모를 통해 공공미술을 선정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한다.

본 연구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제도의 개정과 개정 이후 기금제라는 새로운 대안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실태조사와 제도 분석, 주민설문, 전문가 설문, 해외 제도와 비교 등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였다.

주요어 : 공공미술(제도),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공공미술기금,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

학 번 : 2009-31169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 2 장 관련 이론과 제도 ····· 6

제 1 절 관련 이론 ····· 6

1. 공공미술 ····· 6

2. 문화정책 ····· 10

3. 기금 ····· 11

제 2 절 연구사 ····· 13

1. 문화예술 향유 지표 ····· 13

2.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과 공공미술 제도 ····· 17

제 3 절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 21

1. 제도의 내용 ····· 21

2. 공공미술 프로젝트 ····· 26

제 3 장 건축물미술작품 현황과 주민 인식 ····· 28

제 1 절 건축물미술작품 현황 ····· 28

1.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현황 ····· 28

2. 실태조사 ····· 33

제 2 절 건축물미술작품 주민 인식 ····· 37

1. 설문조사의 개요 ····· 37

2. 공공미술과 문화예술·도시경관 향유 실태 인식 ····· 40

3. 건축물미술작품과 문화예술·도시경관 향유 실태 인식 44

4. 상관관계 분석 ····· 47

제 4 장 해외 공공미술 제도 ····· 52
제 1 절 공공미술 전문가 인식조사 ····· 52
1. 북아일랜드 정부기관 ····· 52
2. 네덜란드 공공미술 작가 ····· 54
3. 독일 공공미술 단체 ····· 58
제 2 절 Percent for Art 제도 비교 ····· 62
1. 프랑스 ····· 62
2. 미국 뉴욕 ····· 65
3. 미국 시카고 ····· 69
4. 캐나다 토론토 ····· 72
5. 호주 시드니 ····· 77

제 5 장 결론 ····· 80

인용문헌 ····· 87

Abstract ····· 103

부록
1.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와 건축물미술작품 인지도 조사 설문지
2. 퍼센트법 비교표

표 목 차

[표 2-1] 공공미술의 개념과 제도적 변화 ····· 9
[표 2-2] 2007년도 시각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16
[표 2-3] “도시공원 예술로” 사업내용 ····· 27
[표 3-1] 설문 표본수 ····· 39
[표 3-2]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향유수준(문항1) ····· 40
[표 3-3] 공공미술의 문화예술 향유기여도(문항2) ····· 41
[표 3-4] 거주지역 도시경관 만족도(문항3) ····· 42
[표 3-5] 거주지역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증대(문항4)· 43
[표 3-6] 건축물 미술작품 인지도(문항5) ····· 44
[표 3-7] 건축물미술작품의 문화예술 향유 기여도(문항6)· 46
[표 3-8]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경관 개선 기여도(문항7)· 47
[표 3-9] 공공미술의 문화예술 향유 기여도와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 필요성 인식의 상관관계 ····· 48
[표 3-10] 도시경관 만족도와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 필요성,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경관 개선기여도 상관관계· 49
[표 3-11] 문화예술 향유수준, 공공미술의 문화예술 향유 기여도, 건축물미술작품의 문화예술 향유기여도 상관관계· 49
[표 3-12] 강남구, 강북구, 노원구, 중구 인구와 미술작품 설치현황 ····· 53
[표 4-1] TACBOC 건축비용 기준 ····· 74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5
[그림 2-1] 미술작품 설치·심의절차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절차 ····· 24
[그림 2-2] “도시공원 예술로” 추진절차 ····· 27
[그림 3-1] 전국 건축물미술작품 종류별 설치 건수 ····· 29
[그림 3-2] 서울특별시 건축물미술작품 종류별 설치 건수· 30
[그림 3-3] 서울특별시 건축물미술작품 종류별 설치 금액· 31
[그림 3-4] 테헤란로의 조사대상 건축물미술작품 위치 ····· 36
[그림 3-5] 테헤란로의 조사대상 건축물미술작품 현황 ····· 36
[그림 4-1] The Blue Road ····· 55
[그림 4-2] Miereninvasis ····· 57
[그림 4-3] Art-Eggcident ····· 57
[그림 4-4] Mobile Museum ····· 62
[그림 4-5] Media Facades Festival Berlin ····· 62
[그림 4-6] 토론토 On-site, Off-site 기금 허가 과정 ····· 62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 들어 많은 도시에서, 공공공간(urban open space)이 새로운 기능과 형태를 수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과 사용자들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스타일과 시스템의 출현, 그린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변화, 천연자원 보호와 자연환경 유지의 중요성 대두, 여가를 위한 도시 공간 창출 등 다양한 가치와 시각을 도시 공공공간에 실현시키고 있다(Thompson, 2002, pp. 59-72).

예술과 환경의 결합체인 공공미술은 도시 개혁과 도시환경의 미적향상에 도움을 주며 인간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데 공공미술을 이용하고, 공공미술은 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장소의 개혁에 다양한 형태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Hall, 2004, pp. 175-176).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미술작품 제도는 국내 공공미술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정착되어 가고 있는 문화정책이다(용호성, 2010, p. 14). 이는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며 방문하는 도시를 아름답게 만듦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양현미, 김성규, 2010, p. 156) 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는 도시 문화 환경 개선과 예술지원이라는 정당성 때문에 이 제도의 존속을 원하고 있지만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과 사업관계자들의 역량문제로 인해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적용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 제도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변동[1]에 대한 논의와, 담합과 리베이트 문제, 도시의

1) 정책변동은 정책과정 중 새로운 정보, 지식 등을 다른 단계로 피드백시켜 정책내용이

미관개선 효과여부, 설치장소와의 부조화와 사후관리 문제점 등에 관한 논의들이 있다.

미술작품 설치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1년 5월 25일 (2011년 11월 26일 시행)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조문에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즉,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시 건축비용의 약 0.7%정도를 사용하여 건축부지 내(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의무사항이 있었는데, 2011년 이를 확대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건축주가 미술작품 설치비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하였다[2].

기금에 출연하여 공공공간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면, 담합과 리베이트수수에 의한 수준 낮은 미술작품 설치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에 의한 허가 지연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별 건축물 인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있으나, 개정 이후 지금까지 기금출연 건수 41건, 누적기금은 29억에 불과하다. 이는 건축주의 미술작품 소유권 포기에 대한 보상의 불만족, 사적영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재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준조세[3] 성격을 띠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부과기준, 대상 및 절차의 객관화·투명화, 부과근거 및 기준 등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져야하지만, 개정 3년이 지난 지금도 체계적인 기금 운용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기금이 타 예술분야에

나 정책집행방법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정책내용과 정책과정의 변화 중 일반적으로 정책내용 자체, 즉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의 변화 뿐 아니라 정책집행 방법과 절차까지도 포함한다(하민지, 2014, p.30).

2) 2011년 5월 25일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등 제2항. 이하 선택적기금제라 칭한다

3) 준조세(Quasi-tax)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 중 조세를 제외한 것 혹은 기업 혹은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금전적 부담이다(김창배, 2007, p.6).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해 모이는 기금이므로 제도의 목적인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부합한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011년 건축미술작품제도의 개정으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개별건축물에 미술품을 설치하는 것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시작한지 3년이 지났지만, 사용 지침이 없으며 기금 출연률이 저조하다. 또한, 개별건축물 인근에 미술품을 설치하는 방식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궁극적으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해 출연하는 기금이 제도의 원 취지인 시민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사용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과 제도운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금운영 방향 및 사용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분석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제도에 의해 설치된 미술작품 설치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구별 누적 설치 건수와 금액을 비교하여 미술작품 설치가 많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도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미술과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인지도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도에 대하여 설문한다. 이 두 분석을 바탕으로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해외 공공미술 전문가들에게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과 공공미술제도 적용의 특이점에 관해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넷째, 해외 여러 도시의 Percent for Art 제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용방안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연구에서 도출한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금운용 단위 및 세부지침을 도출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공공미술, 문화정책, 기금 등을 정의하고,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와 문화예술기금에 의해 진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내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도시경관과 관련된 공공미술에 관한 연구와 문화예술 향유를 측정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전국 누적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과 서울특별시의 구별 설치현황을 분석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현재까지 설치된 미술작품의 실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상대적으로 미술작품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도출한다. 앞에서 도출한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에 대한 기여, 건축물미술작품 인지와 건축물미술작품의 문화예술 향유·도시경관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해 설문한다. 인구, 남녀비율, 연령으로 3차 층화하여 분류한 설문지로 주거지역에서 설문을 실시한다. 자료처리방법으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Scheffe 사후검정과 교차분석의 카이검정, pearson 상관관계분석 등을 이용하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셋째, 해외 공공미술 제도를 조사·분석한다. 직접 방문하여 북아일랜드 Arts Council의 공공미술담당자와 네덜란드의 공공미술 작가, 독일을 기반으로 한 유럽의 민간 공공미술단체에게 공공미술과 공공미술기금, 도시 내 공공미술의 역할과 도시경관을 위한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인식을 인터뷰하여 유럽의 공공미술 현황과 전문가 인식을 조사·분석한다. 그리고 5개 대상지 - 프랑스, 미국의 뉴욕(New York)과 시카고(Chicago), 캐나다의 토론토(Toronto), 호주의 시드니(Sydney) - 의 Percent for Art 제도를 고찰하여 특징적인 내용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해 출연된

기금의 사용·집행 행정 단위를 도출하고 원활한 기금 사용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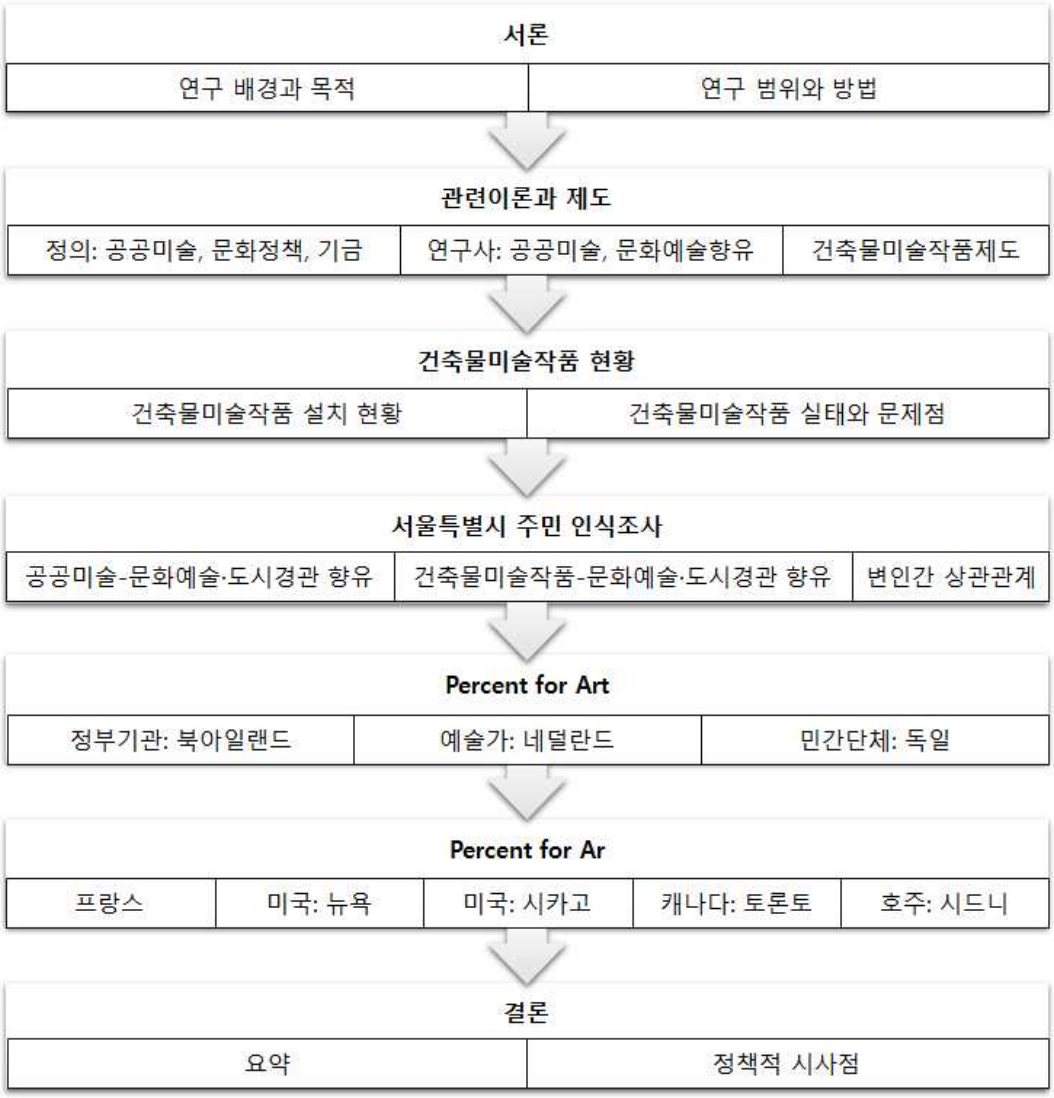

그림 2-1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 관련 이론과 제도

제 1 절 관련 이론

1. 공공미술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과거에는 마을의 광장에 있는 기마상(騎馬像)이나, 시청 앞에 있는 조각품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공공미술은 “예술가들이 만든 함께하는 식사(communal meal), 예술가들이 주도하는 일상미술”(Heartney & Gopni, 2005, p. 15)이라 할 수 있다.

공공미술은 공공(Public)과 미술(Art)의 결합이며, 각 단어의 의미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1967년, 영국의 미술 행정가 존 윌렛(John Willett)이 저서『도시 속의 미술(Art in a City)』에서 처음으로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 여러 분야에서 ‘공공성’을 정의하기 시작하였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찾는 노력이 공유되었다(Miles, 1997, pp. 52-53). 공공장소에 조성되는 공공미술은 전시장에 진열되는 미술품과 달리 공간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공공의 미술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공공미술은 공공의 성격으로 일상공간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대상 공간에 적극 개입하여 특유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소와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나 단체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멜컴 마일즈, 2000, p. 21).

중산층의 성장과 도시화에 의해 공공공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오늘날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 공공공간에서 공공미술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도시의 공공공간은 도시 구성원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공동커뮤니티의 장이자 개인·공적·사적 생활의 장이다. 각 도시들은 도시마케팅을 위하여 도시

통합이미지 구축의 수단으로 공공미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공공미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외부 장소로 나온 미술품들은 매체가 된 공간을 다변화시키고 새로운 의사소통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신혜경, 2010, p. 557). 공공미술은 미술품, 공공공간, 보는 사람 사이의 상호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공공미술은 특정 장소와 시간관계하여 시행되는데, 이는 주로 공공미술작품을 제작하는 사람과 공공미술 활성화 제도와 문화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Zebracki, 2012, p. 4).

일반적으로, 공공미술은 공공기관이 후원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외부에 존재하며 예술영역의 경계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예술이라고 정의한다(Finkelpearl, 2001, p. x , 5).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된 미술작품이나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활동, 미술관 밖의 미술, 장소-특정적 미술, 작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미술, 사회의 소리를 담아 표현하는 미술 등(임성훈, 2008, pp. 107-108)을 의미한다. 공공미술은 공공공간(public space)이나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설치·전시하는 미술품을 의미하며, 공공이 사용하거나 그들을 위해 유지되고(public interest), 경우에 따라 공공기금(public funds)을 사용하여 실행하는 미술이나 대중 참여를 고려한 미술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예술의 공공성은 공공장소에서 관객과 교류의 품질과 영향에 달려있고, 예술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Knight, 2008, p. 1). 법제와 관련해 보면 “공공미술의 개념은 작가지원과 대중의 문화향수 증대, 그리고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김영호, 2012, pp. 7-8)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공공미술은 건축물, 조각, 시설 등에서부터, 경관, 건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관계가 있고, 미술작품은 도로시설을 대신하거나 건축의 일부(출입문, 기둥, 바닥, 담장, 계단, 다리, 광장, 로비, 공원 등)를 모방하면서, 설치장소 속으로 몰입하면 사회적 가치를 갖게 된다(Kwon, 2004, pp. 108-113; Cartiere & Willis, 2008, p. 15). 예술가로서 도시디자이너와 계획가들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예술가들은 장

소-특정적(site-specific) 공공미술을 통해 도시를 발전·변화시키고 있으며 시민과 의사소통하고 있다. 현대 공공미술은 다양한 견해에 기초한 사회적 실천이며, 실내와 실외, 개인과 공공, 거리와 전시장에서 공공공간을 특성화하고 있다(Kreivyte, 2004, p. 130; 이은정, 류숙희, 2013 p. 301). 유사용어로 미학적형식과 오브제를 우선시하는 환경미술, 환경조각, 환경조형물과 작품이 놓이는 장소와 개방성을 중시하는 공공미술, 공공조각, 야외조각 등(박삼철, 2006, p. 86; 성완경, 1999, p. 338)이 있다.

공공미술은 다양한 혜택을 준다. 첫 번째로, 정신적 측면에서 지역민에게 자부심을 부여하고, 애향심을 갖게 한다. 그로인해 사람들의 정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도시 이미지가 살아난다. 둘째,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사람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여 보다 쾌적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재생은 인구 유입, 교육 향상,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 감소의 효과를 준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용을 촉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게 하여 도시경제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공공미술은 시각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일상적인 환경의 요소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준다(김경욱, 양현미, 이영범, 전용석, 최범, 2006, p. 50; Mustaffa, 2009, p. 69-96).

공공미술은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 도시계획 속의 미술(Art in Urban Design),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양현미, 2004, pp. 177-202)로 여러 차례 개념적인 변화를 겪어왔다<표 2-1>. 건축 속의 미술은 우리나라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주었고, 공공장소의 미술은 공공공간의 활성화와 장소 활용의 실용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도시 계획 속의 미술은 기금제를 통해 운영되며, 도시건축계획에 미술가가 참여하는 것이다. 새로운 장르의 미술을 통하여 시민과 작가가 소통하고 시민문화공동체를 형성한다.

표 2-1 공공미술의 개념과 제도적 변화

구분	특징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	- 미술작품을 통한 정부 건물의 미적 가치 제고 - 프랑스1%법(1951), 미국 연방정부 공공시설청(GSA) '건축 속의 미술프로그램'(1963) - 작품경향: 순수미술 위주
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Place)	- 공원, 광장 같은 지역의 공공공간 활성화 - 미국 국립예술진흥기금(NEA) '공공장소 속의 미술 프로그램'(1967), 자치단체의 미술을 위한 퍼센트 법 - 순수미술 위주였다가 공공미술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됨 - 초기에는 스튜디오 작품을 크기만 키워 공공장소에 설치→점차 공공장소에 적합한 미술로 변화되면서 미술과 삶의 결합을 지향
도시계획 속의 미술 (Art in Urban Design)	-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공공공간의 인간화와 네트워크화 - 도시디자인팀에 미술가 참여가 제도화됨.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종합계획(public art master plan)수립, 기금제(pooling system)도입 - 라데팡스, 바르셀로나, 필라델피아, 달라스,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시행 - 미술가가 디자인한 가로시설물, 공원,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등으로 공공미술 영역이 확장됨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	-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작용하는 시각예술 - 1980년대 시카고 공공미술 프로그램(Chicago Public Art Program)에서 시작 - 수잔 레이시(Susan Lacy):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를 사용하여 관객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과 관계된 쟁점에 대해 대화하는 것. 결과보다는 과정 중시, 특히 주민참여가 필수적인 요소. - 시민에 대한 문화·교육적 효과를 겨냥한 비디오 제작, 퍼포먼스, 미술공방 운영, 정원 가꾸기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 시각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영화, 비디오, 공연 등으로 영역 확장

* 자료: 양현미(2004) p178-181 내용 재구성

공공미술의 개념이 점차 공공장소 속의 미술, 도시계획 속의 미술,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

해 미술품을 설치하는 것은 1단계인 건축 속의 미술에 속하며, 우리나라의 공공미술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것은 도시계획 속의 미술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시민의식과 공공미술관련 단체들의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제도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공미술이 도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와 거주지의 경관미화 등의 혜택을 준다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공간에 대한 공공미술 지원이 필요하지만, 법률적 제도의 한계와 예술가 등 전문가 집단 및 관련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지원=문화예술발전'이라는 등식은 희망이나 정치적 신화일 뿐이며, 현실세계에서 양자의 관계가 다양한 조건, 매개변수들이 포함된 복합적 인과관계일까(정홍익, 2001, p. 10)? 공공미술이 도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의 미적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시의적절한 제도의 적용과 효과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2. 문화정책

문화정책(Culture Policy)은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고토 카즈코, 2004, p .21)이며, 공공정책으로써의 문화정책 주체는 국가 또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는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1990년에 문화정책 전담부서인 문화부가 설립되었고, 2000년에는 정부 전체 예산에서 문화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화예산을 3%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편집부, 2002, p. 99). 문화예술은 현실적 대응 측면에서 다른 분야 정책에 비해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지며, 그로인하여 정책 적용을 판단할 때 현실적 시급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곤 한다. 그래서 정책시행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곤 한다. 하지만

문화정책은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문화예술의 보급을 통해 일반인과 노동자들을 인간적으로 순화시키고 교육시키는 기능을 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정철현, 2005, p. 149).

문화정책에서 공공의 개념은 중요하며, 공공성은 그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여 각 정책 집행 시 범주를 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치체제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며, 체제속의 대다수 구성원들로부터 책임자로 인정받으며 자신들의 역할범위 내에서 그 구성원들(국민)에게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것이 공공성이다(Easton, 1965, p. 212).

미술가 지원과 대중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 그리고 도시경관의 개선이라는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정책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책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규모가 적고, 정치성이 강해서 기복이 심하다(이홍재, 2006, p.154).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일부로 출연되는 기금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3. 기금

기금(Fund)이란 특정사업을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예산원칙의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예산 하나만 갖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대국가는 경제·사회·문화 등의 시책을 펴나가기 위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지역과 집단을 보호, 육성할 목적으로 법률로써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근, 2006, p.51).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기금은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에 충당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준비금)을 적립하여 두고 원본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수업을 수행한다. 그래서 기금은 예산외(off budget)로 운영된다(예산회계법 제7조 제2항).

기금제도는 1961년 재정된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도입되었지만 1991년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제도적 틀이 갖추어졌다. 재정규율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아서 2001년 개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안처럼 국회 의결을 거치게 되었다. 현재는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20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종익, 강창구, 2004, p. 384).

기금조성방법은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분류기준을 설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출연에 의해 공공기금의 재원조성이 이루어지고, 민간출연에 의해 기타기금의 재원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금의 재원이 정부출연 외의 민간 강제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축미술작품제도에 의한 기금출연은 준조세적 성격이 강하여 분담자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1990년대부터 기금운용 제도의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기금은 우리나라 재정제도 중 문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기금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사하는 선행연구는 많으나(강신범, 2005, p. 108) 기금운용 평가에 관한 것은 드물다.

준조세 형태로 마련된 기금을 가지고 조성되는 건축물미술작품들이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준조세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야 하지만, 개정 3년이 지난 지금도 체계적인 기금운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20년 이전에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규고가 적고, 정치성이 강해서 기복이 심하다. 따라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해 출연하게 된 기금의 안정성과 건강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재원확보와 고갈 방지를 우선 검토해야한다. 문화예술기금 내에서 타 예술분야가 아닌 공공미술을 위한 사용에 대해 연구하여야 한다.

제 2 절 연구사

1. 문화예술향유지표

많은 연구들에서 문화향유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문화향유의 측정 방법론이나 이의 응용에 근거를 둔 논문은 거의 없다. 다음 장의 일상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설문을 위하여, 문화예술 향유실태를 평가한 연구와 문화예술 향유를 평가하기 위해 지표를 도출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문화예술 향유 실태 평가 연구로, Rino J. Patti(2008)는 생활수준의 향상 등 환경적 요인으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었으며 특히 문화를 경제적 재화로 인정하게 되면서 시민의 문화 향유가치는 문화경쟁력의 향상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정책 추진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이 정책 집행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박미애(2009)는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지원 사례를 연구하였고, 소득별 문화시설 예술행사 연간 참여율에서 수입이 올라갈수록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수연(2012)은 미적체험 예술교육이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미적체험예술교육, 문화예술참여, 향유인식확대에 대하여 설문하였고, 향유인식확대에 대한 설문의 하위요인으로 문화예술 관람과 향유 인식요인, 미적체험예술교육과 향유 인식요인, 문화예술 활동과 향유 인식요인을 사용하였다. 이소리(2013)는 부모의 예술참여수준이 자녀의 예술가치지각과 예술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예술경험을 관람활동, 취미활동, 참여활동, 학습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예술 향유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추출 연구로, 심응섭(1994)은 지역의 문화예술 및 지방정부의 문화예술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문화예술 중 문화예술행사와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의 관람유무를 묻고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변수는 세 가지 유형인데,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만족, 문화예술의 양에 대한 만

족, 문화예술의 질에 대한 만족에 대해 설문하였다. 서순복(2009) 지역문화향유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추출한 요소들을 조합하여 변수의 조작화를 시행하였다. 먼저, 객체화된 문화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작품 소유여부와 소비(향유) 여부, 가정의 문화공간 보유 여부를 설문하였다. 다음으로,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측정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교육여부를 물었고, 마지막으로 문화활동에의 흥미 또는 관심, 취향 및 문화예술에 대한지식과 문화 및 학문 활동에 대한 기대에 관해 설문하였다. Radbourne 등(2010)은 예술참여의 혜택을 측정하기 위해, 관객의 예술경험 지표를 4개로 추출하였다; Knowledge transfer or learning (정보제공 프로그램, 시설 교육, 새로운 정보의 제공), Risk management(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평가, 접근의 용이성, 경제적 가치, 관람객과의 의사소통, 품질만족도 등), Authenticity(공연 정보와 실재 공연의 일치성, 예술가와 관객의 관계 등), Collective engagement(사회 구조, 관객과 예술가의 일반적 가치·일상 경험 공유). 민인철(2011)은 광주광역시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를 조사하였다. 문화예술 향유의 수준을 감상(접근)수준, 실천(표현)수준, 창조(소통)수준으로 구분하였고, 문화활동 종류를 문학도서(글) 읽기, 영화관람, 연극·뮤지컬 관람, 미술관 관람, 박물관 관람, 전통예술 관람, 사진전시회 관람, 음악회·오페라 관람, 무용발표회 관람, 문화예술축제 참가, 디지털미술관 검색, 대중가요 콘서트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이재호, 송건섭, 김도희(2010)는 지역민의 문화향유 정도를 실측하고자 하였다. 6개 항목-문화유산 이용, 전시 및 예술 행사 관람, 체육 및 수련시설 이용, 여가 활동, 대중문화 이용, 도서관 이용률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문화유산 이용, 예술 행사 관람, 체육 및 수련시설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시설보다도 주민의 관심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므로 프로그램을 늘리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화예술체육부에서는 문화예술을 지수·지표화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문화관광부(2002)는 문화향유 자료를 지수(index)를 문화유산, 문학과 예술, 대중문화, 사회문화적 활동 및 여가 활동의 4개 영역

으로 나누고 하위 102개 개별지표(측정항목)로 구성하여 설문한 바 있다. 가능한 표준화된 종합수치 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문화현실에 대한 대비 비교 기준점을 우선 정하는 데에서 다소 문제점이 드러난다. 문화체육관광부(2010)는 문화향유실태를 여가생활, 예술향유, 매체이용,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이용, 문화활동, 문화관련 사이트, 문화관광으로 구분하였고, 이중 예술향유를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클래식음악회/오페라, 전통예술 공연, 연극, 무용, 영화, 대중가요콘서트/연애 등으로 분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11)는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연구에서 문학행사, 미술 전시회, 클래식음악회·오페라, 전통예술, 연극, 무용, 영화, 대중가요콘서트, 연애 등 문화예술 관람 및 방문을 문화예술 향유의 지표로 분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13)는 지역문화 지표 중 문화향유 및 복지지표로, 각 지역별 문화향유를 위한 무료 공연 진행 건수, 지역별 문화이용권 발급대비 이용률과 예산대비 집행률, 지역별 문화예술프로그램 수, 전체 인구 수 대비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 창작 발표활동 횟수, 문화예술관련 지출 총액/인구수,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인구수를 사용하였다.

문화예술분야 중 일부의 향유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추출 연구가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2008)은 문화예술분야 중, 공공도서관 향유지표 개발에 관해 연구하였다. 지표는 향유기반지표, 향유실태지표, 향유결과지표, 향유기초지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향유실태지표는 이용자-사용자, 방문자, 참가자 등-을 의미하고, 향유결과지표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혹은 도서관 사용 후 얻은 점에 대한 지표이며, 향유기초지표는 각 응답자의 도서관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2008)에 의하면 2007년도 시각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표준 평가지표는 <표 2-2>와 같다. 평가영역은 크게 사업계획 및 성과, 사업내용, 홍보 및 서비스, 관리 및 운영으로 나뉜다. 홍보 및 서비스 중 제반 서비스는 공모 사업 행정 지원의 적절성, 공모 사업 교육 및 서비스 제공 정도, 주민 만족도 정도, 이 세 지표로 평가하며, 주민 만족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설문을 실시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는 공공미술

시범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공성과 예술성, 지역사회 기여 등의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 제기됨으로 인하여 평가결과 도출과 지표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공공미술의 7가지 주요 요소인 계획 수립 주체의 전문성 및 개방성, 공공미술 기본 계획의 유무, 예산 수립의 자율성, 계획의 완결성, 공공미술 큐레이터쉽, 장소 연구, 상호작용을 지표의 항목으로 고려하고, 세부 평가내용을 일러두어 사업 수행과 평가 수행 시 주요 평가 사항으로 마련토록 해야 하며,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계자 인터뷰와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표 2-2 2007년도 시각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표준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 및 성과	사업계획	30
	목적달성도 및 기여도	
	성과관리 및 개선	
사업내용	전시행사	30
	부대행사	
홍보 및 서비스	홍보성과	20
	관객개발 및 제반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직관리	20
	재정관리	
	시설관리	

*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2008) p.36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만족도에 관하여 설문하는 것이며, 가계소득이나 교육과 관련된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을 위해 문화예술 향유지표를 추출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지표추출의 객관·타당한 기준은 없다.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준 연구는 있었으나, 문화예술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객관적 지표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문화와 예술의 개념은 집단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연구의 주제나 목적, 연구의 시기와 대상,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의 특성, 설문응답자의 특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연구

설계 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표를 추출해야하며, 검증단계를 거쳐 각 연구에 타당한 지표를 추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2.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과 공공미술 제도

공공미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술 분야에서 이루어졌었으나, 건축, 조경, 정책 분야 등에서도 점점 관심을 갖고 있다. 공공미술에 관한 연구는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연구와 공공미술 관련제도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연구가 있다. Juliet Hamilton, Leslie Forsyth, Daniel De Iongh(2001)는 영국에서 30년 동안 경제사회 재생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공공미술이 정책에 나타난 것은 최근을 이이며, 스코틀랜드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리적, 인구 통계 학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공공미술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중심업무지구 등 가시성이 높은 지역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경제 사회 재생에 성공적으로 기여함을 밝혀내었다. Tim Hall, Iain Robertson(2001)은 80년대 이후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정체성과 장소성 개발 및 시민 정체성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 확장, 교육가치의 개발 등의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장치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John Mccarthy(2006)의 연구에서, 현대 도시들은 '문화 구역'을 설정하고 문화구역으로 설계되는 특정 지역에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장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Manchester's Northern Quarter와 Belfast's Cathedral Quarter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공미술의 사용이 지역의 이미지 형성과 정체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여수빈(2007)은 문화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사례로 글래스고의 문화도시 만들기, 노섬버랜드 공공예술 실행 계획,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서울 공공예술 사례 등을 들어, 공공성 획득을 통한 공공예술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며, 공공예술을 위한 공공장소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진아(2008)에서는 맨하튼 남부의 황폐지를 주거 상업지구와 연계한 베터리 파크 시티에 장소-특정적 조각이 설치

되었고, 이는 환경이나 다른 구조물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고안되었으며, 건축가, 미술가, 조경가의 협업을 통하여 실용성의 미학을 구현하였다고 하였다. 이 경우는, 사용자 중심의 미학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공공미술의 방향을 선도한 사례라 하였다. 박신자(2009)는 공공미술은 미학이 삶 속에 개입하는 일상적인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2005, 2007년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문화공간의 개선방안으로; 통적 도구로서의 공공미술, 참여적 대중화프로그램 제시, 주체로서의 시민, 생활문화로의 공공성 완성을 제안하였다. Venda Louise Pollock, Ronan Paddison(2010)는 80년대에 공공미술이 경제와 사회 재생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였으나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어떻게 공공미술이 계획과정에 포함되는지와 기금운용, 지역성의 가시성, 정책과 과정 및 공공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밝혀냈다. 이순성(2010)은 우리나라 서울 문래동예술촌과 중국 798 따산즈예술구를 대상으로 거주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정책체계를 완비하여야 하며,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정책에 대한 수정 및 보충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가들이 요구하는 민관파트너십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현정(2011)은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문화 복지를 위한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진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각각의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목적과 목적달성여부,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성공적이었는지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경진(2011)은 도시재생에서 공공미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새장르 공공미술이 도시와 관련된 공동체적 참여와 상호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희선, 김희순(2011)은 서울시가 문화거점조성을 통한 지역재생을 위하여 설립한 창작공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창작공간이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의 창조성을 배양하고 예술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의 특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민경, 황희연, 권정주(2012)는 국가 R&D 연구 목적으로 문화·예

술 공간을 조성한 청주시 사직2동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예술매개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주거공동체 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분석하였다. 강명석(2012)는 2009개정 교육과정 미술교과서를 분석하고, 통영 공공미술 현황을 조사하여 현행 공공미술교육의 문제점과 교육 지도방향 제시하였다. 프로세스의 최종목표는 비평가가 되는 것이다. 강완규(2012)는 마을미술프로젝트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말한 협조가 조성되고, 지역의 역사, 생태적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하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장소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작품의 수준과 완성도, 관광홍보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현황을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보존과 관리 및 홍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강림(2013)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한 구도심 지역의 상업가로 재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부산시 '광복로 문화거리'와 울산시 '문화의 거리', 창원시 '창동 예술촌' 등의 사례지 분석을 통하여 상인· 전문가·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구성이 필요하며 물리적인 가로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적인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공공미술 제도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수년전부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그로 인해 제도와 제도에 의해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연구 또한 많았다. 공공미술에 관한 연구의 초기연구는 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형식, 즉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해 설치된 미술품 실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정책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9)는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2011개정에 영향을 끼친 연구이다. 북미지역 선택적 기금제에 대한 사례 연구 및 민간 건축주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선택적 기금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하여 말하였다. 민간 건축주 50개 법인에게 한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에 대한 규제 인지도와 선택적 기금제에 대한 참여 의사 조사”에 관한 설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0.05%의 요율일 때(현행 0.1%) 참여의사자가 71.2%이고, 일반건축물의 경우 0.3%의 요율일 때(현행 0.7%) 참여의사자가 71.2%였다. 양현미, 김선규(2010)는 선택적 기금제의 적용 대상을 정부안에서는

건축주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건축물에도 이를 도입해야 하며, 기금 출연액은 건축물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금액의 0.5%선에서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선택적 기금제 도입으로 인하여 민간 건축주는 규제 완화 효과를 얻고(절차의 간소화), 미술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을 예상하였다. 권혁인, 양태근, 주희엽, 이진화(2012)는 건축물 미술장식품 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SCR(Situation-Complication-Resolution)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공공미술 개념으로 확대해야하며 기금납부제도 도입, 중개업체 등록제 도입, 심의위원 비례 구성제 도입, 수수료 제도 보완 등을 제안하였다. 김영호(2012)는 2011년 11월 개정 법조문에 대해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작가지원과 대중의 문화향수 증대,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변화 확산, 매체와 형식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는 공공미술 개념, 공적 자금의 증대, 교육과 관광을 위한 문화콘텐츠로 공공미술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문희숙(2012)는 도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수용되어진 건축물미술장식은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도시외부공간의 공해현상으로 전락하였고 이를 개선하고자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련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미술장식의 용어 대신 미술작품으로 사용하여 장식이라는 폄하된 표현대신 작품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공공미술 제도 관련 연구에 관한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미술 연구는 미술, 예술경영, 도시공학, 건축, 조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고 있지만,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공공미술정책과 관련하여 '건축물미술장식품'으로 불리는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련된 연구가 대다수이고, 1990년대 이후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적 관점보다는 미학적 관점에 치중하였다(정철현, 2008, pp. 92-93). 특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관련된 기금운용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다. 황선일(20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9), 양현미 외(2010), 권혁인 외(2012)가 있었으나 이 연구들은 2011

년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개정 법률에 관한 연구로는 김영호(2012), 문희숙(2012)이 전부이다.

선행 연구 중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기금운용 지침에 관한 연구나 도시경관과 관련된 문화예술기금 운용에 관한 것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미술 제도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해, 특히 2011년 개정 이후 도입된 기금제에 대해 살펴본다. 광역지자치단위의 기금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외 관련제도와의 비교와 여러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의 목적인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설문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이가 있다.

제 3 절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1. 제도의 내용

우리나라의 도시 내에 최초로 옥외조각이 설치된 시기는 1960년대 말 기념동상사업이 추진된 시기였다. 1966년에 정계 및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된 애국선열동상건립위원회가 발족하여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연차적으로 한 해 3~5점의 작품을 길가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였다. 비용은 대개 재계 실력자들이 헌납 형식으로 부담하였고, 참가한 미술가들은 위원회 활동에 가담한 작가들을 포함한 소수 중견작가들이었다. 이 위원회의 사업으로 말미암아 1960년대 후반부터 10년간에 걸쳐 한 해 평균 20점 이상 동상을 설치했으며,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양식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김도경, 1995, p.25). 1970년대 초반 법령화된 문화예술진흥법의 제 6조에 의해 한국문화진흥원이 설립되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제정되었다. 1972년 8월에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시 건축비 1%이상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9월에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에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을 유치하면서 도시환경 미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유사한 형태를 지닌 수준 낮은 작품들이 기준 없이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게 된다. 올림픽이 종료된 직후, 설치된 환경조형물 중 주변 미관을 해치는 작품을 철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조례 세부 규정이 신설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와서 서울시에서 의무사항이 되었고, 1995년에는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였다. 1997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작업단이 적용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문화관광부와 문화예술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건축주-중개업자-작가-공무원 사이의 대형 비리 사건들이 잇달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작가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및 작품의 질적 수준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여러 논란 속에, 2000년에 와서 미술장식 사용금액 비율을 1%이하로 하향조정하였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0.7%로 책정하고 있다. 2007년 11조에서 9조로 옮겨왔으며, 2009년 7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보칙에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 대한 규제 재검토 조항이 신설되었다.

2009년 2월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1년 5월 25일 개정(2011년 11월 26일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용어의 변경이 있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부터 모든 조항에서, 미술장식이라는 용어 대신 미술작품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행령에서, 미술작품이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과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이라 하였다. 이는 건축물에 대한 장식의 개념에서, 공공미술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둘째, 심의 의무를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이관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①②③④항에, 해

당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술작품을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심의운영이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변경되면 제도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개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에서,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미술작품은 건축주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규제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이에 건축주가 바뀌거나 건축물이 증축되는 등의 상황에서 작품의 손실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⑥항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에 70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인 건축주가 미술품을 직접설치하고 싶지 않을 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부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기금납부제의 장점은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 보다, 행정절차가 간소하고 그로인해 건축기간이 단축되는 점이다<그림 2-1>. 기금납부제의 단점은 미술품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 즉 자산가치와 관련이 없다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2013년 12월 30일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37조(규제의 재검토) 항목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9.7.7. 개정)”가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됨으로써 제도의 존폐위기에서 벗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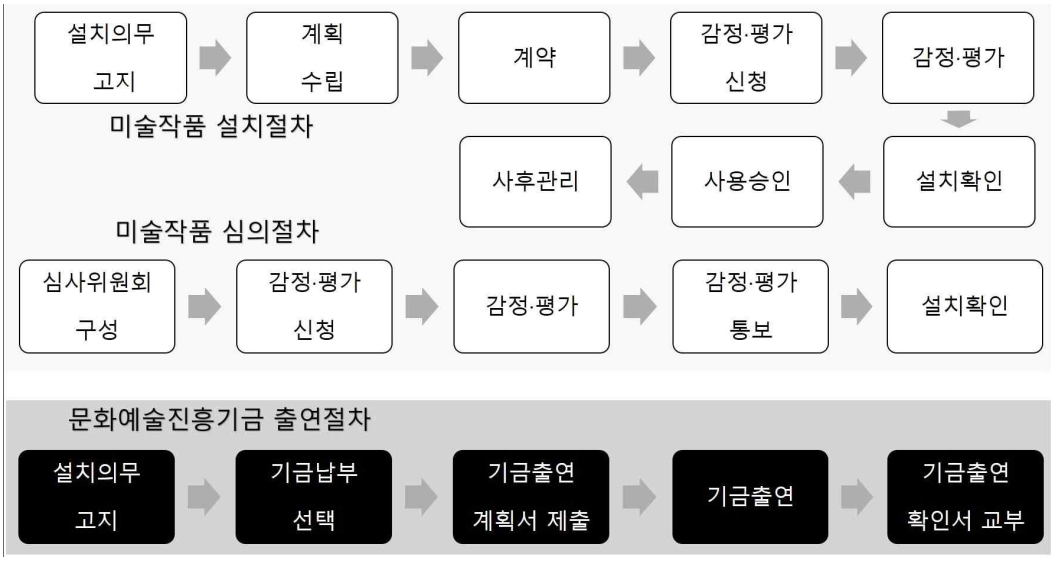

그림 3-1 미술작품 설치 · 심의절차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절차 비교
* 자료: https://www.publicart.or.kr 공공미술포털(2014.5.30. 접속) 참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설치의무를 고지하면,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할지 기금을 납부할지 선택한다. 기금납부를 선택하였다면, 시·도지사 및 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기금을 출연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출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세제 혜택이 있는데, 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인 경우100%한도로 소득공제 된다.

선택적 기금제는 민간 건축주에게 세 가지 규제완화효과를 준다. 첫째, 행정적 부담의 면제와 법적 의무 이행의 간편화이다. 선택적 기금제를 채택한 건축주는 미술 작품을 직접 설치할 때와 비교할 때 작가 선정, 미술 장식품 심의 계획서 작성, 심의, 작품 제작, 설치, 설치보고, 사후관리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부수적 규제-미술 장식 설치 시 감정 평가 신청, 미술 장식의 철거 훼손 시 원상회복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된다. 둘째, 의무 이행이 간편해짐에 따라 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준공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나 건축물의 입지 조건과 구조상 미술 장식품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유리한 방법이다. 셋째, 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기금 출연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11월~2014년 10월 17일까지 기금출연 건수는 41건에 불과하다. 그 중 민간 개발자라 볼 수 없는 주체가 한 기금 출연은 총 6건으로, 국공사 4건(한국고용정보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한지적공사)와 재개발 2건(흑석6재정비촉진구역, 홍은동 제3주택 재개발)이 있다. 2011년 11월11부터 2014년 11월까지 3년 동안 약 29억 정도[4]가 기금으로 출연되었다.

민간건축주의 기금제 미 선택의 가장 큰 원인은 적은 환원요율일 것이다. 미술작품 설치비의 70%만을 기금에 출연하면 되지만, 과거 직접 미술작품으로 설치를 할 때도 이면계약이나 리베이트 등으로 그 정도의 금액만을 투자하면 되었었다고 한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비용 절약 측면에서 미술작품 직접설치보다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사용처[5]에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진흥을 위한 사업”이 추가되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출연된 기금으로 공공미술 설치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이며, 공공미술관련 조사·연구·교육을 비롯한 홍보 및 마케팅,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관리,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지원, 공공미술 사후관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시한 공공미술 시범사업은 한 건 뿐이며, 그 외의 내용은 기금 출연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출연된 기금사용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타 예술분야가 아닌 공공미술 분야에 사용하여야 한다.

---

4) 2014.11.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담당자 통화

5)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민족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및 발전/남북 문화예술교류/국제문화예술교류/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2.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예술진흥원은 개정 이후 두 개의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시행된 것은 1건이다[6]. 2012년 6월 1일~2013년 12월 31일에 시행된 “도시공원 예술로”는 공공미술 작품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고 시민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공공미술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건물의 미술장식에서 벗어나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ic Places)’형태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사업의 장소인 도시공원, 놀이터에 예술이 개입하고, 예술성과 공공성이 높은 작품이 설치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여 기존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차별화를 두고자 하였다. 또한 기획·협력체계 및 주민참여, 추진과정에 대한 아카이빙을 병행하고, 워크숍과 교육사업의 콘텐츠로 연결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모범 프로세스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금 사용에 대한 정책적 제한이 없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마다 새로운 방안을 수립할 것인지, 혹은 공공미술 기금 사용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

공모를 통하여 사업의 장소(사이트)와 예술단체를 선정하였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별 각 1건만 응모 가능하게 하였고, 영구임대주택 놀이터에서 5건 내외를 추천하였다. 5곳을 선정하였으나, 협약채결과정에서 한 곳이 포기하여 4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7].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예술단체 선정은 기획자후보추천위원회와 장소선정 지방자치단체에서 50여명의 기획자 후보를 추천받아 제한경쟁공모의 형태로 선정하였다. 별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장소의 적합성, 사업의 파급효과, 지자체(관리주체) 추진의지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심의·결정하였다. 2012년에는 기획비, 리서치비, 작품 제작비 등을 위주로 각 프로젝트당 약 1억 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에는 작품 제작비, 설치비 등을 위주로 지자체와 1:1이상을 매칭하는 조건으로 약 1억 원이 지원되었다<그림 2-2>.

---

6) 2013~4년 2차년에 거쳐 진행을 계획한 “2013 공공미술 2.0”사업 계획이 있었다. 건물의 미술장식에서 벗어나 수월성이 뛰어난 작품 설치 혹은 교육 및 커뮤니티아트 등 다양한 공공미술 사업 추진하여 공공미술의 저변을 넓히고, 설치 위주의 공공미술 사업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으나 최종 선정 대상이 없었다.

7) 2014.11.04. 아르코미술관 해당 전시담당자와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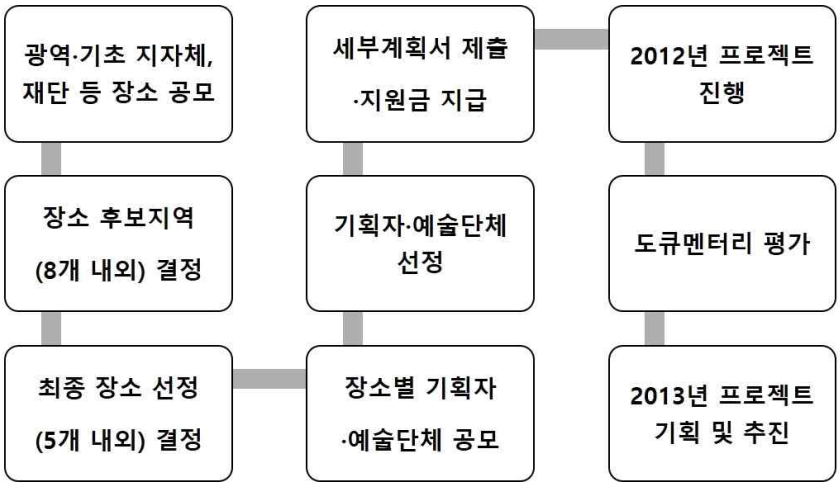

그림 2-2 "도시공원 예술로" 추진절차
*자료: http://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5.30. 접속)

대상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놀이터 등 포함) 조성 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기존 도시공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도시공원 기반 공공미술 프로그램 등이 있다<표 2-3>.

표 2-3 "도시공원 예술로" 사업내용

사업제목	예술단체	사업장소	사업내용
홍티둔벙	와이즈 건축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1608 다대문화공원	• 장림공단 내, 작가 레지던시인 홍티아트센터와 함께 건립. • 커뮤니티와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은유한 둔벙들을 두렁길로 연결.
소행성G	김장언 김소라	충남공주시 금성동204 금성배수장	• 노후된 배수장의 녹지공간에 공공미술을 접목, 문화예술공원 기능 부여. • 인공구조물인 배수장과 금강의 자연 지형을 결합.
차이를 위한 산책	티팟(주)	충남 계룡시 금암동1401 금암근린공원	• 신도시 계획에 따라 조성된 근린공원이나 이용률이 떨어짐. • 질서 변형을 통해 쓰임을 재구성.
라운드 프로젝트	홍보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349-1 상림공원	• 프로그램과 조형작업을 통하여 도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함. • 1100년 전 만들어진 최초의 인공숲인 상림숲과 연지공원, 고운광장의 연결로 도시공원의 역할 강화.

*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a 참고하여 재구성

제 3 장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현황과 주민 인식

제 1 절 건축물미술작품 현황

1.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현황[8)]

1983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발동 이후 현재까지 제작된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소수의 작가들이 다수의 작품을 설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9)] 작가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건축주가 작가선정에 대해 마땅히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구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이해되어 진다.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 수는 총 14,436개이며, 미술작품의 지역별 설치 수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순이다. 서울 3,280개, 경기도 3,769개, 인천 897개 등 수도권에 설치된 작품이 7,946개, 전체의 55.0%이다<그림 3-1>. 이는 건축물미술장식제도가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설치의무를 부여하므로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각, 회화, 벽화 등의 순이었으며, 흔히 '환경조형물'로 인식하는 조각이 11,315개, 78.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조각과 회화가 96.43%로, 나머지 종류는 거의 없다<그림 3-1>. 문화예술진흥법 12조 4항에서 건축물미술작품을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의 조형예술물과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상징탑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아홉 개 항목을 제외한 미술장식품을 기타로 분류한다.

---

8) http://www.publicart.or.kr 공공미술 포털 (2014.10.9. 접속)

9) 문화체육부(1993) 『전국 환경조형물현황』에서, 1993년까지 제작된 서울시 환경조형물중 다수가 소수의 작가들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조형물 제작자 명단에 오른 작가 259인 가운데 10점 이상을 제작한 이는 15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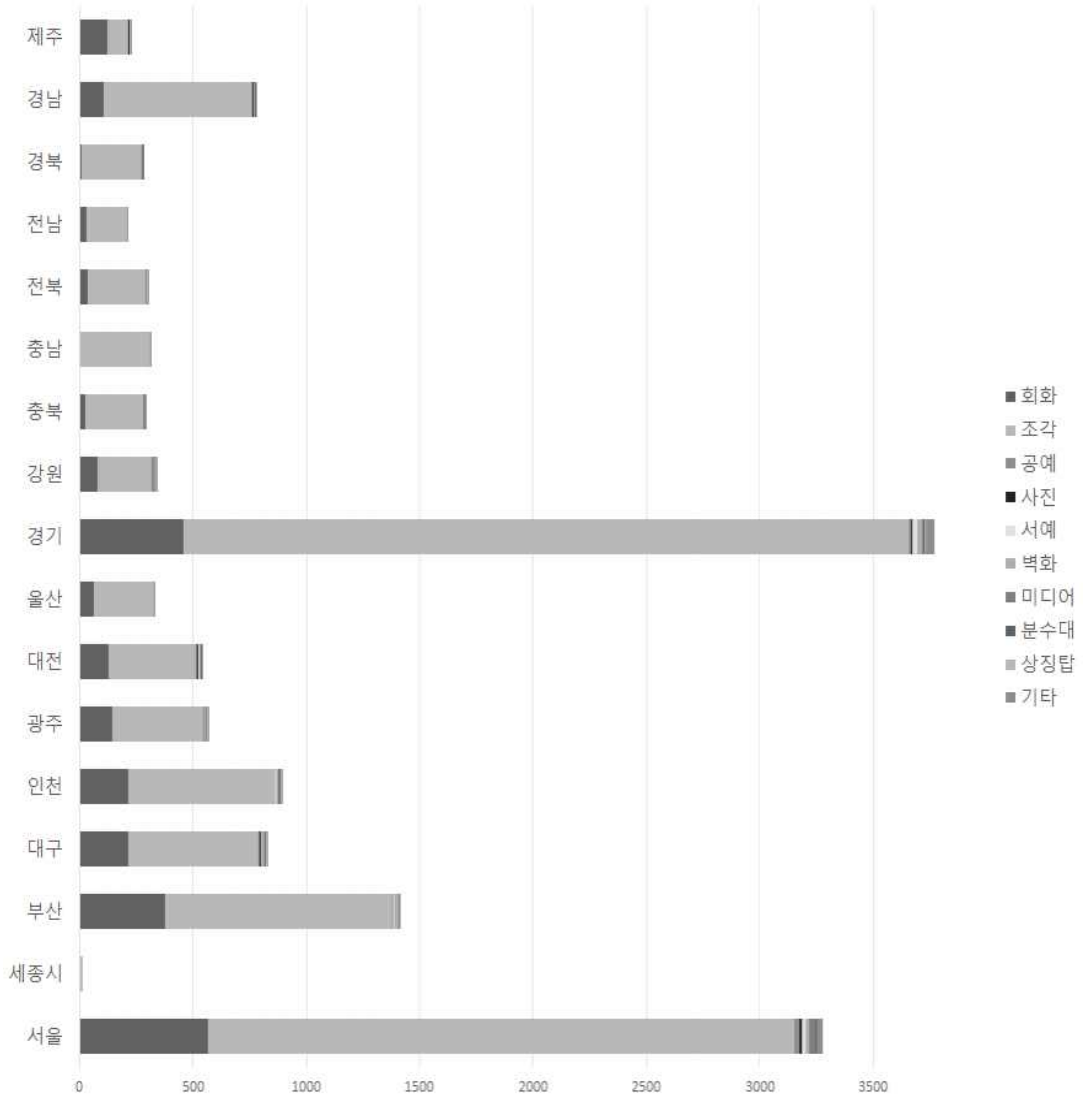

그림 3-1 전국 건축물미술작품 종류별 설치 건수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은 총3,279개이다. 강남구 314개, 서초구 285개, 송파구 231개 순이고, 가장 적게 설치된 곳은 강북구로 49개이다. 작품분류별 특이점은 조각 2,589개, 78.9%이고 회화 565개, 17.2%로 전체의 96.1%이다<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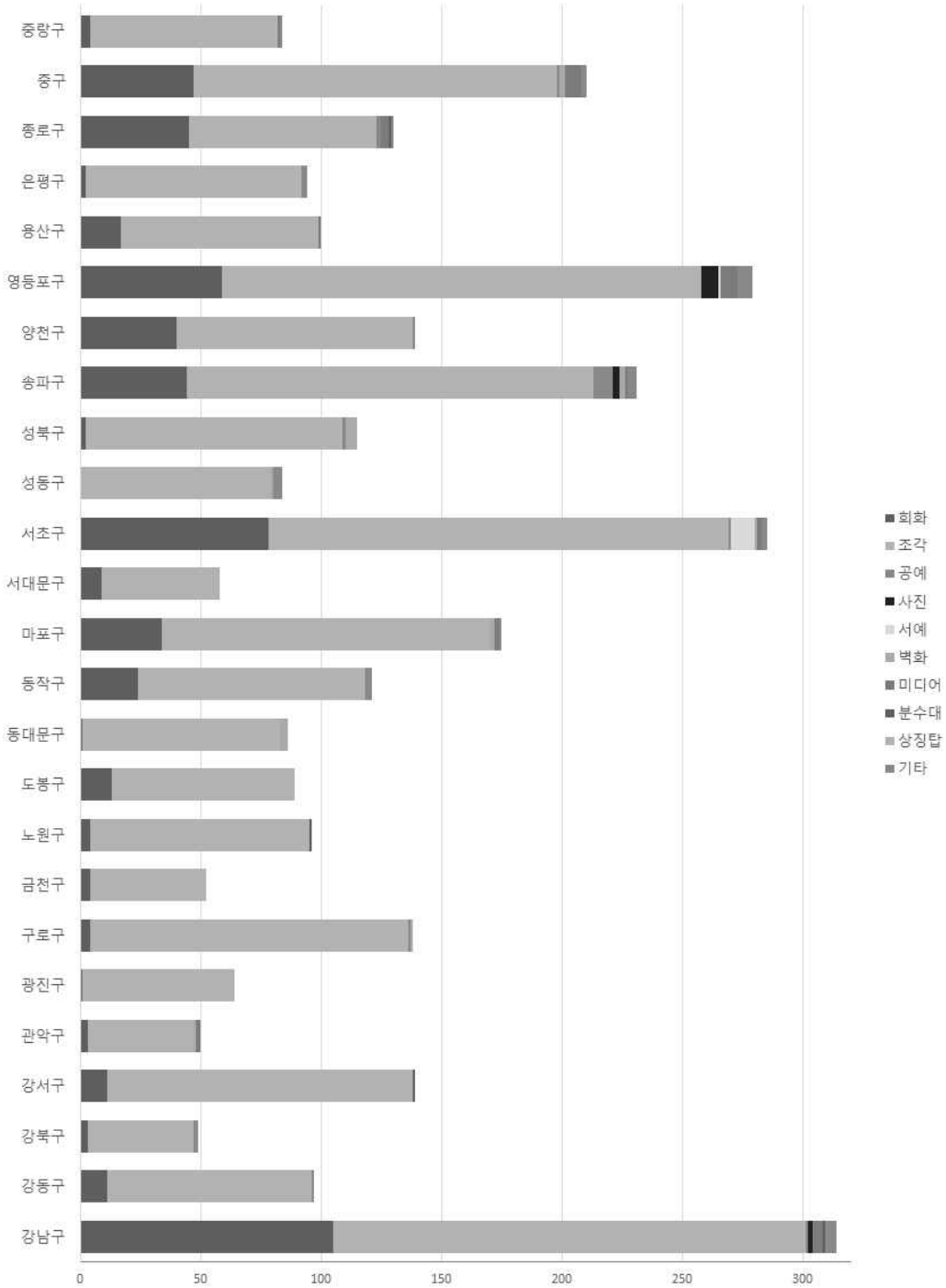

그림 3-2 서울특별시 건축물미술작품 종류별 설치 건수

서울특별시 건축물미술작품 누적 설치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약 11.6%인 중구이다. 작품건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이어 4번째로

많지만 누적 설치 금액은 가장 높다. 다음으로 높은 곳은 송파구, 영등포구 등이며, 누적 설치 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노원구이고 설치 건수가장 적은 강북구는 두 번째로 적다<그림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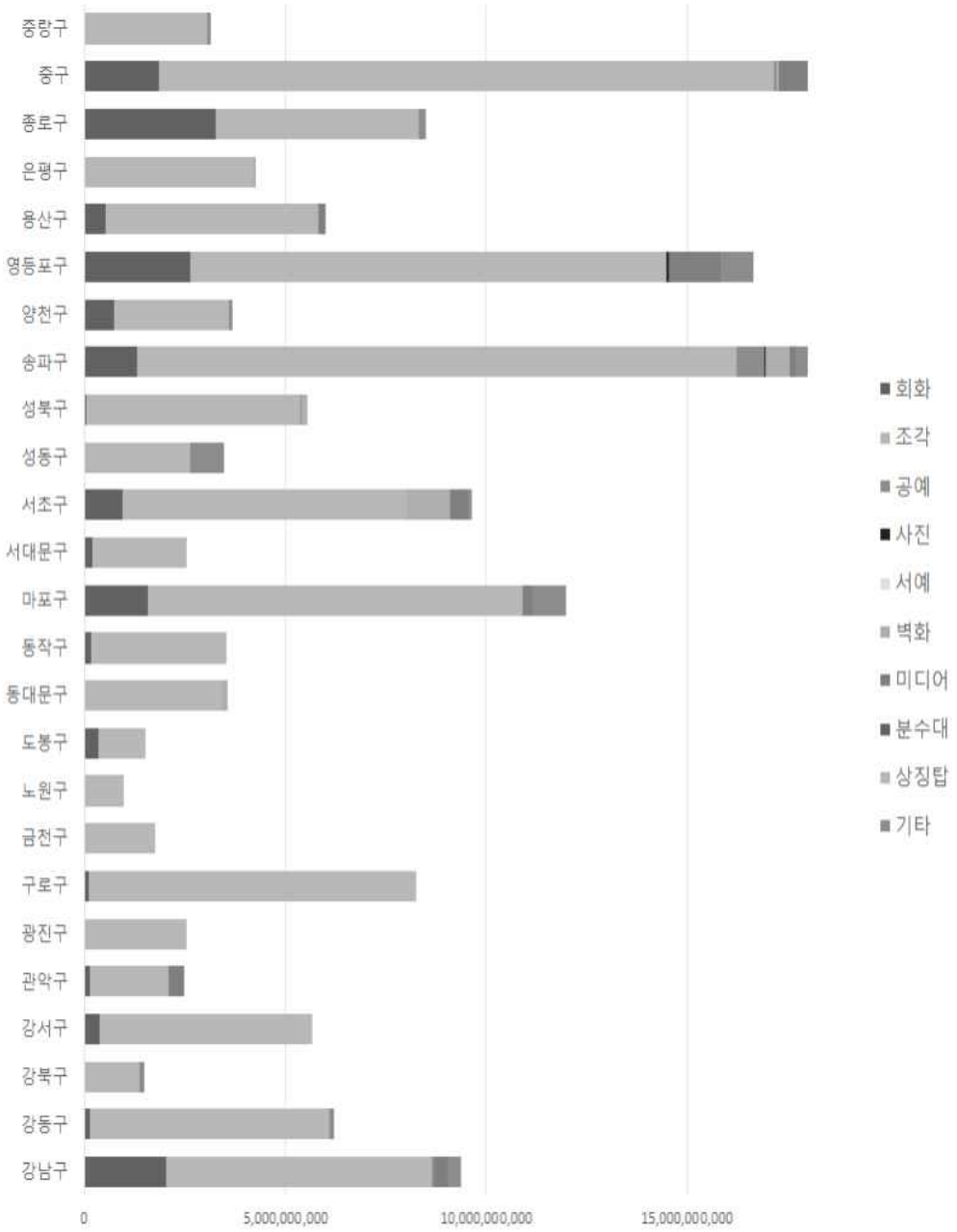

그림 3-3 서울특별시 건축물미술작품 종류별 설치 금액

건축물미술작품 분포는 고르지 못하다. 전국에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 수는 총 14,476개이며, 수도권에 55%가 집중되어 있다. 유형별로는 조각이 전체의 78.52%이다.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은 총 3,279개이며, 설치건수별로는 강남구, 서초구 등이 많고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작품수가 가장 적으며, 설치금액별로는 중구, 송파구 등이 많고 강북구, 노원구의 누적 설치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본 제도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심업무지구에 해당 건축물이 밀집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서울특별시 구별인구는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의 순으로 많으며 중구가 가정 적다. 노원구의 인구는 두 번째로 많으나 설치 금액은 가장 낮으며,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금액이 가장 높은 중구의 인구가 가장 적다.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는 필요한 지역이나 부족한 지역에 대한 분석 없이 개별건축물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시민이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한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개선 효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축물미술작품 부족지역을 도출하고, “Up-Lift Approach”개념을 적용하여 부족지역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Ahn, Tong-Mahn et al.(2013)에서 처음 사용한 Up-Lift Approach(ULA)란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부족 집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의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의 불균등현상을 줄이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의료서비스, 도서관이나 운동시설, 육아시설, 주택, 대중교통 등 도시 내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pp. 23-28).

설치현황조사와 더불어 “Ⅲ.2.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인식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의 건축물미술작품과 공공미술,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에 관한 인식을 설문하여 기금우선 사용 지역을 도출한다.

2. 실태조사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해 설치된 미술작품의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진율(1994)는 건축물과 조화 정도를 환경조형물의 소재, 표현형태, 규모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환경조형물의 조각적 기능과 건축물과 조화가 높으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도경(1996)은 조경분야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연구이며, 서울시 건축물 부설 예술장식품 심의대장의 작품 중 일부를 대상으로 설치되는 공관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소형작품일 경우 대중과의 대화기회가 적음을 밝혀냈다. 이용덕(1999)은 서울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와 환경조각현황을 파악하여, 공공성 결여와 일부 작가의 독점, 환경조각들의 예술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주환, 박태희, 허준(2004) 도시가로 경관에 있어 환경조형물의 이미지 및 시각적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경조형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조사하였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도시공공환경의 질을 저해함을 밝혔다. 김순분, 안동만(2005)는 공동주택 외부공간의 미술장식품 재료에 관해 연구하였고, 이를 통하여 미술장식품 종류는 조각이 가장 많고 재료는 화강석이 가장 많음을 밝혔다. 김영규(2005)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건축물에 대한 환경조형으로 넓힐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장소의 미술이라는 제도의 원 취지를 염두한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안은정(2006)은 환경조형물의 특성으로 환경성, 장소성, 대중성, 공공성, 체험성, 상징성을, 환경조형물이 갖추어야 할 조형요소로 공간과 규모, 배경과 전경, 윤곽과 형태, 재료와 형태, 양과 밀도, 빛과 조명 등을 열거하였다. 우정민(2006)은 성남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환경조형물을 조사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 선호됨을 밝혔다. 김지현(2009)는 공공미술이 설치된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공공미술이 공간의 이미지 및 분위기 향상에 영향을 주고 공간이 있음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 광화문지역 공공미술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미술이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배경주(2010)의 연구에서 대구

시의 환경조형물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의 환경조형물은 작가의 작품성(77%)을 강조한 미적기능(75%)을 형태적(60%)으로 나타낸 환경조형물이 주로 통로(56%)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환경조형물이 도시나 공간을 특성화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재정(2010)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환경조형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며 이용자의 미적 관람기회, 참여의 기회, 소통의 기회, 지역 정체성에 대한 배려 등을 위한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조형미술작품을 설치하는데 있어 의뢰자와 설치하는 작가의 인식이 서로 소통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움은 여전히 존재하며, 작품의 의도만 살리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거나 사전답사 없이 작품을 양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여진, 유지우(2012)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가로공간의 18개 건축물 미술장식품 대부분은 가로 공간에 위치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으나, 조경 공간에 설치되어 가려지거나 건축물과의 거리가 좁아 전면만 감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야간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와, 제목과 작품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류선정, 안동만(2013)은 일반인과 전문가에게 대구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 8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건축물미술작품 심의 채점표를 활용하여 설문하게 하였다. 일반인 설문에서 2개, 전문가 설문에서 1개의 공공조형물이 기준 점수 미달이었으며, 공모 가점을 받아야 겨우 기준점(70점)을 넘기는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류선정(2009)은 서울특별시 작품종류별 설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 테헤란로[10]에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표본지역은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 해당하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으면서 유동인구가 하루 최대 10만인 곳으로, 2007년 3월, 5회 답사를 통하여 43개 작품을 조사하였다<그림 3-4>, <그림 3-5>. 이를 통하여, 위치, 규모, 재질 및 색깔, 작품명· 작자 미표기, 유지·관리 등의

10) 테헤란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15번지(강남역 사거리) 서초구계에서 송파구 잠실동 50번지(삼성교)에 이르는 가로이다.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미술작품이 보행 동선에서 멀리 위치하거나 높아서 시각축에서 벗어나는 경우와 주차장, 화단, 광고판에 가려여 감상 기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미술작품의 규모와 공간-보도의 넓이, 건축물과의 간격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미술작품과 주변공간의 재질 및 색깔이 동일한 경우 미술품을 인지하기 힘들었다. 넷째, 작품명과 작자를 미 표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미술장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지・관리의 편이성을 위하여 이름표를 달아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의 문제로 일부 미술장식품은 칠이 벗겨지거나 녹이 발생하였다(pp. 31-37).

앞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기준미달의 건축물미술작품이 난립하고 있으며 설치되어 있는 미술작품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건축물, 조경 공간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화강석 등 일부 소재로 집중되어 있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고려 없이 재료선택을 하고 있었다. 셋째, 공간과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큰 규모의 작품을 주로 선호하고 있었다. 넷째, 야간조명이 필요한 곳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제목과 작품설명이 누락된 곳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야기한 배경으로 미술작품의 공공성과 예술성 부족, 일부 작가의 독점, 의뢰자와 작가 간 소통의 부재, 설치 시 작품의 예술성보다는 양과 밀도를 중시하는 분위기, 사전답사 없이 작품을 양산하는 현황, 감상자의 접근성과 감상의 용이성을 고려하지 않는 설치공간의 선정,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는 작품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3-4 테헤란로의
조사대상 건축물미술작품 위치

그림 3-5 테헤란로의 조사대상
건축물미술작품 현황

제 2 절 건축물미술작품 주민 인식

1. 설문조사의 개요

공공미술이란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에 대한 만족도와 공공미술이 그것들에 영향을 끼치는가, 건축물미술작품을 인지하고 있는가와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설문하였다.

본 설문에 앞서 설문지 검증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공공미술, 건축물미술작품 등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 5인에게 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계획과 설문지보고 자유롭게 개선점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일상 문화예술”로 조작적 정의한 ″(실내감상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중 야외공간에서 무료로 향유할 수 있는 조각, 공예, 벽화 등 예술작품과 분수대, 벽천, 건축물의 일부 중 미술품이라 말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의 개념을 “공공미술”로 정정하였다. 다음으로, 11월 7-8일에 서울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도시경관 실태 만족도와 공공미술 필요성에 관한 문항이 복합질문임이 확인되어 두 문항으로 나누었다.

설문지 구성[11]은 일반사항조사, 문화예술 향유·도시경관과 공공미술, 건축물미술작품 등 세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은 거주구, 성별, 연령, 가계수입[12]등을 포함하고 설문지에 공공미술에 대한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를 명기하였다. 문화예술 향유 등에 대한 문항은 문화예술 향유 인지도, 공공미술 기여도, 도시경관 실태 만족도, 공공미술 필요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문항은 건축물미술작품을 인지하는지 묻고 인지할 경우만 건축물미술작품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여와 도시경관 개선에 대한 기여에 대해 답하게 하였다. 건축물미술작품 인지

11) 부록 1. 참조

12) http://www.index.go.kr e 나라지표 (2014.10.08. 접속) 보너스를 포함한 월평균 가계소득은 2014년 2/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평균 수입인 4,152,171원을 기준으로 함.

여부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금액이 가장 많은 중구, 가장 적은 노원구와 설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 가장 적은 강북구 등 4개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9일에서 14일까지 6일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다. 주민을 거주민[13]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주거지역[14]에서 실시하였다.

설문자수는 층화임의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의 한 가지 방법인 비례배분법(proportional allocation method)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1차 층화로 4개구의 주민수를 인구비례할당 하였고, 2차 층화로 성별을, 3차 층화로 연령별 재구성하여 표본수를 추출 하였다. 모집단의 상대비율에 근거하여 각 층별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였고, 연구자와 설문요원들[15]이 교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지 진행과정에서 노약자의 경우 직접 읽어드리는 방법으로 설문 조사

---

13) 편의표집에 의한 설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거주민으로 제한하였다. 보행자도 공공미술과 건축물미술작품의 혜택 수혜자이기는 하나, 그 지역을 처음 방문한 보행자는 그 지역의 경관이나 문화예술, 공공미술과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이를 파악하고 본 설문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거주민으로 한정하여 설문하였다.

14)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10.30.접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항에서, 주거지역을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서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층주택,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각 구별로 공동주택밀집지역을 지정하여 설문하였다.

15) 연구자와 설문요원 3인이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요원 3인은 컴퓨터 공학과 학부생, 디자인과 석사졸업생과 석사과정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에 앞서 설문교육시간을 가졌다. 문화예술 향유, 도시경관, 공공미술, 건축물미술작품의 정의와 내용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고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였다. 그 후, 설문조사 시 유의점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를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인구는 2014년 10월 현재 10,383,651명이며, 4개구의 20세미만 인구를 제외한 연령구간 총 인구는 1,311,692명이다. 이를 비례배분하여 표본수를 산출하였으며, 총 표본수는 821명이다. 각 구별로는 강남구 288명(남 135명, 여 153명), 강북구 175명(남 85명, 여 90명), 노원구 288명(남 138명, 여 150명), 중구 70명(남 35명, 여 35명)[16]이다<표 3-1>.

표 3-1 설문자수(명)

설문자수	강남구			강북구			노원구			중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대	53	25	28	27	14	13	49	25	24	12	6	6
30대	64	30	34	33	17	16	54	27	27	14	7	7
40대	64	30	34	36	18	18	67	32	35	13	7	6
50대	54	26	28	35	17	18	58	28	30	14	7	7
60대	53	24	29	44	19	25	60	26	34	17	8	9
총계	288	135	153	175	85	90	288	138	150	70	35	35

자료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 및 건축물미술작품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거주구, 성별, 연령, 가계소득)에 따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16) http://rcps.egov.go.kr:8081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4.10.30.접속) 연령구간의 실제인구를 살펴보면, 강남구의 20대 이상인구는 남자가 216,132명, 여자가 244,936명으로 총 461,068명이다. 강북구는 남자가 136,371명, 여자가 142,924명으로 총 279,295명이다. 노원구는 남자가 221,226명, 여자가 239,961명으로 총 461,187명이다. 마지막으로 중구는 남자가 54, 876명, 여자가 55, 266명으로 총 110,142명이다. 표본수 계산은 소수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고, 총계·계와 각 항목들의 합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소수점이하에서 조절하였다.

ANOVA)을 사용하였다. 또한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명목척도 문항(5번 문항)은 교차분석의 카이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문항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모두 유의수준 $p<.05$, $p<.01$, $p<.001$에서 검증하였으며,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공공미술과 문화예술·도시경관 향유 실태 인식

문항 1. 일상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계십니까?

전체 평균은 3.07의 보통수준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 예술을 향유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향유수준(문항1)

변 인	구 분	N	M	SD	t/F	p	Scheffé
거주구	**강남구(a)**	288	**3.23**	1.03	6.725***	.000	a,b>d
	강북구(b)	175	**3.13**	1.18			
	노원구(c)	288	2.99	1.15			
	중구(d)	70	**2.61**	1.07			
성별	남	393	3.00	1.14	-1.700	.090	
	여	428	3.14	1.10			
연령	20대(a)	141	3.07	1.13	3.903**	.004	b,c>e
	30대(b)	165	3.24	1.07			
	40대(c)	180	3.21	1.03			
	50대(d)	161	3.02	1.11			
	60대이상(e)	174	2.82	1.22			
가계 소득	4백15만2천원미만	448	2.74	1.11	-9.887***	.000	
	4백15만2천원이상	371	3.47	1.00			
전 체		821	3.07	1.12			

**p<.01, ***p<.001

거주구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강남구민(3.23)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정도가 가장 높고 다음 강북구(3.13), 노원구(2.99), 중구(2.61)순이었고, 유의수준 .001미만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725$, $p<.001$). 연령에서

는 30대(3.24)와 40대(3.21점)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준이 높았고, 60대 이상(2.8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수준이 유의수준 .01미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903, p<.01). 마지막으로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월 4백15만2천원 이상(3.47점) 집단이 4백15만2천원 미만(2.74점)집단 보다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미만에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9.887, p<.001).

문항 2. 공공미술이 선생님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전체평균은 2.61점으로 보통이하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공미술의 문화예술 향유기여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거주구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강남구(2.80)와 노원구(2.73)에서 공공미술이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는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강북구에서는(2.34)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미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767, p<.001).

표 3-3 공공미술의 문화예술 향유기여도(문항2)

변 인	구 분	N	M	SD	t/F	p	Scheffé
거주구	**강남구(a)**	288	**2.80**	.97	7.767***	.000	a,c>b
	강북구(b)	175	**2.34**	1.14			
	노원구(c)	288	**2.73**	1.04			
	중구(d)	70	2.59	1.14			
성별	남	393	2.66	1.06	.034	.973	
	여	428	2.66	1.07			
연령	20대(a)	141	2.68	1.07	4.528**	.001	d>e
	30대(b)	165	2.67	1.01			
	40대(c)	180	2.64	1.01			
	50대(d)	161	2.90	1.02			
	60대이상(e)	174	2.41	1.13			
가계 소득	4백15만2천원미만	448	2.47	1.02	-5.723***	.000	
	4백15만2천원이상	371	2.89	1.07			
전 체		821	2.66	1.06			

**p<.01, ***p<.001

연령에서는 50대(2.90)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41)이 가장 낮았으며 유의수준 .01미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528, p<.01). 마지막으로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월 4백15만2천원 이상(2.89점)집단이 4백15만2천원 미만(2.47점)집단 보다 공공미술이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는 수준을 좀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미만에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723, p<.001)<표 3-3>.

문항 3. 거주지역의 도시경관의 실태에 만족하십니까?

거주지역 도시경관 만족도 인식 차이의 전체평균은 3.13점으로 보통수준이였다. 강남구민(3.38)들이 강북구(3.5), 노원구(3.01), 중구(2.84)의 거주자들보다 도시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이는 .001미만에서 유의하다(F=9.605, p<.001)<표 3-4>.

표 3-4 거주지역 도시경관 만족도(문항3)

변 인	구 분	N	M	SD	t/F	p	Scheffé
거주구	**강남구(a)**	288	**3.38**	.91	9.605***	.000	a>b,c,d
	강북구(b)	175	**3.05**	1.14			
	노원구(c)	288	**3.01**	1.03			
	중구(d)	70	**2.84**	.91			
성별	남	393	3.06	1.04	-2.035*	.042	
	여	428	3.20	1.00			
연령	20대(a)	141	3.23	1.00	.697	.594	
	30대(b)	165	3.13	1.00			
	40대(c)	180	3.08	1.03			
	50대(d)	161	3.06	1.00			
	60대이상(e)	174	3.17	1.08			
가계 소득	4백15만2천원미만	448	3.13	1.04	-.005	.996	
	4백15만2천원이상	371	3.13	1.00			
전 체		821	3.13	1.02			

*p<.05, p<.001

문항 4. 거주지역의 도시경관을 고려할 때, 공공미술의 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은 3.34점, 보통이상의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거주지역의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증대에 대한 인식 차이는 <표 3-5>와 같이 연령과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구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며, 연령에서는 40(3.51)와 30대(3.44)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60대 이상(3.06)은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공공미술 증대의 필요성 인식이 유의수준 .01미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502, p<.01). 마지막으로, 월 4백15만2천원 이상(3.56점)집단이 4백15만2천원 미만(3.16점)집단 보다 공공미술 증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미만에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105, p<.001).

표 3-5 거주지역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증대에 대한 인식(문항4)

변 인	구 분	N	M	SD	t/F	p	Scheffé
거주구	강남구(a)	288	3.22	.99	1.894	.129	-
	강북구(b)	175	3.45	1.24			
	노원구(c)	288	3.39	1.18			
	중구(d)	70	3.34	1.15			
성별	남	393	3.33	1.14	-.099	.921	
	여	428	3.34	1.12			
연령	20대(a)	141	3.43	1.04	4.502**	.001	b,c>e
	30대(b)	165	3.44	1.09			
	40대(c)	180	3.51	1.06			
	50대(d)	161	3.27	1.12			
	60대이상(e)	174	3.06	1.26			
가계 소득	4백15만2천원미만	448	3.16	1.09	-5.105***	.000	
	4백15만2천원이상	371	3.56	1.14			
전 체		821	3.34	1.13			

**p<.01, ***p<.001

3. 건축물미술작품과 문화예술·도시경관 실태 인식

문항 5.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건축물미술작품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2.1%이였다.

표 3-6 건축물 미술작품 인식수준(문항5)_N(%)

변 인	구 분	인식여부		전체	X^2	p
		그렇다	아니다			
거주구	강남구	149	139	288	13.294**	.004
		(51.7)	(48.3)	(100.0)		
	강북구	105	70	175		
		(60.0)	(40.0)	(100.0)		
	노원구	150	138	288		
		(52.1)	(47.9)	(100.0)		
	중구	24	46	70		
		(34.3)	(65.7)	(100.0)		
성별	남	214	179	393	1.628	.202
		(54.5)	(45.5)	(100.0)		
	여	214	214	428		
		(50.0)	(50.0)	(100.0)		
연령	20대	72	69	141	4.112	.391
		(51.1)	(48.9)	(100.0)		
	30대	90	75	165		
		(54.5)	(45.5)	(100.0)		
	40대	96	84	180		
		(53.3)	(46.7)	(100.0)		
	50대	90	71	161		
		(55.9)	(44.1)	(100.0)		
	60대이상	80	94	174		
		(46.0)	(54.0)	(100.0)		
가계 소득	4백15만2천원미만	177	271	448	64.439***	.000
		(39.5)	(60.5)	(100.0)		
	4백15만2천원이상	251	120	371		
		(67.7)	(32.3)	(100.0)		
전 체		428	391	819		
		(52.3)	(47.7)	(100.0)		

**p<.01, ***p<.001

중구민 중 34.3%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알고 있었고 강북구민 중 60.0%가 건축물미술작품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1미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3.294, p<.01). 남녀의 비율을 비슷하였고,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마지막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월 4백15만2천원 이상 집단이 건축물미술작품을 알고 있는 경우가 67.7%로 4백15만2천원 미만 집단의 39.5%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미만에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64.439, p<.001)<표 3-6>.

문항 6. 건축물미술작품이 선생님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건축물미술작품을 알고 있는 대상자(N=428)의 건축물미술작품이 자신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30.6%로 매우 아니다와 아니다의 부정적 응답의 45.5% 보다 적었고, 전체 평균 2.76점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여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강남구와 중구의 거주자가 다른 지역의 거주자 보다 건축물미술작품이 문화예술 향유의 기여수준을 좀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강북구 거주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4백15만2천원 이상 집단이 2.89점으로 4백15만2천원 미만 집단의 2.58점 보다 건축물미술작품이 문화예술 향유의 기여수준을 좀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1미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995, p<.01)<표 3-7>.

표 3-7 건축물미술작품의 문화예술 향유 기여도(문항6)_N(%)

변 인	구 분	N	M	SD	t/F	p	Scheffé
거주구	강남구(a)	149	2.89	.98	1.313	.270	-
	강북구(b)	105	2.63	1.03			
	노원구(c)	150	2.73	1.17			
	중구(d)	24	2.83	1.05			
성별	남	214	2.71	1.09	-1.134	.257	
	여	214	2.82	1.04			
연령	20대(a)	72	2.82	1.05	1.682	.153	
	30대(b)	90	2.76	1.06			
	40대(c)	96	2.97	1.02			
	50대(d)	90	2.67	1.07			
	60대이상(e)	80	2.59	1.11			
가계 소득	4백15만2천원미만	177	2.58	1.05	-2.995**	.003	
	4백15만2천원이상	251	2.89	1.06			
전 체		428	2.76	1.07			

**p<.01

문항 7. 건축물미술작품이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건축물미술작품을 알고 있는 대상자(N=428)에게 건축물미술작품이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61%로 부정적 응답의 10.3% 보다 6배 높게 나타났고, 전체 평균이 3.67점으로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경관 개선 기여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남구민(3.84점)과 중구민(4.00점)들이 다른 지역의 거주자 보다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경관 기여수준을 좀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북구(3.58점)와 노원구(3.51점) 거주자가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1미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053, p<.01). 사후검정에서는 강북구 거주자와 노원구 거주자 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4백15만2천원 이상 집단의 평균이 3.82점으로 4백15만2천원 미만 집단의 3.46점 보다 건축물미술작품이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는 수준을 더 높게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미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186, p<.001)<표 3-8>.

표 3-8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경관 개선 기여도(문항7)_N(%)

변 인	구 분	N	M	SD	t/F	p	Scheffé
거주구	**강남구(a)**	149	**3.84**	.81	5.053**	.002	d,a>c
	강북구(b)	105	3.58	.98			
	노원구(c)	150	**3.51**	.86			
	중구(d)	24	**4.00**	.98			
성별	남	214	3.59	.94	-1.740	.083	
	여	214	3.74	.83			
연령	20대(a)	72	3.49	.99	1.826	.123	
	30대(b)	90	3.62	.89			
	40대(c)	96	3.80	.84			
	50대(d)	90	3.78	.83			
	60대이상(e)	80	3.60	.89			
가계 소득	4백15만2천원미만	177	3.46	.89	-4.186***	.000	
	4백15만2천원이상	251	3.82	.86			
전 체		428	3.67	.89			

**p<.01, ***p<.001

4. 상관관계 분석

위의 문항들 중,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17]을 실시하였다. 첫째, 공공미술이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있는가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공공미술 설치가 필요한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공공미술이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는가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공공미술 설치가 필요한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도시경관에 만족하는가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공공미술 설치가 필요한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가 필요

17) Mimmack et al.(2001)는 0.9이상일 때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0.7~0.9일 때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0.5~0.7일 때 상관관계가 있다, 0.3~0.5일 때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p.284). Rubin(2012)는 0.5이상일 때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0.3일 때 상관관계가 있다, 0.1일 때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p.140). 이렇듯 연구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0.1~0.4이하 수준일 때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 0.4~0.7이하일 때 상관관계가 있다, 0.7이상일 때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긍정적 관계, - 부정적 관계).

한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공공미술이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는 수준과 공공미술의 설치증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 r=.343으로 .001 수준에서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3-9>.

표 3-9 공공미술의 문화예술 향유 기여도,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 필요성 인식의 상관관계

		공공미술의 문화예술 향유 기여도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 필요성
공공미술의 문화예술 향유 기여도	Pearson상관계수	1	
	유의확률 (양쪽)		
	N	821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 필요성	Pearson상관계수	.343***	1
	유의확률 (양쪽)	.000	
	N	821	821

***p<.001

두 번째로, 거주지역의 도시경관 만족도와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 필요성과의 관계는 상관계수 r=.072로 유의수준 .05미만에서 유의하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역의 도시경관 만족도와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경관 개선기여도 간의 관계는 r=.031로 상관관계가 낮고,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필요성 인식과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경관 개선기여도 간의 관계는 상관계수 r=.187로 유의수준 .001미만에서 아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향유수준과 공공미술의 자신의 문화예술 향유 기여도의 관계는 상관계수 r=.344로, 문화예술 향유수준과 건축물미술작품이 자신의 문화예술 향유 기여도의 관계는 r=.239로 두 경우 모두 유의수준 .001미만에서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공공미술의 기여도와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건축물미술작품의 기여도는 유의수준 .01미만에서 아주 약한 상관관계(r=.126)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표 3-10 도시경관 만족도와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 필요성,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경관 개선기여도 상관관계

		도시경관 만족도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 필요성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경관 개선기여도
도시경관 만족도	Pearson상관계수	1		
	p(양쪽)			
	N	821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 필요성	Pearson상관계수	.072*	1	
	p(양쪽)	.038		
	N	821	821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경관 개선기여도	Pearson상관계수	.031	.187***	1
	p(양쪽)	.519		
	N	428	428	428

*p<.05, ***p<.001

표 3-11 문화예술 향유수준, 공공미술의 문화예술 향유 기여도, 건축물미술작품의 문화예술 향유기여도 상관관계

		문화예술 향유수준	공공미술의 문화예술 향유기여도	건축물미술작품의 문화예술 향유기여도
문화예술 향유수준	Pearson상관계수	1		
	p(양쪽)			
	N	821		
공공미술의 문화예술 향유기여도	Pearson상관계수	.344***	1	
	p(양쪽)	.000		
	N	821	821	
건축물미술작품의 문화예술 향유기여도	Pearson상관계수	.239***	.126**	1
	p(양쪽)	.000		
	N	428	428	428

**p<.01, ***p<.001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실태, 공공미술의 기여, 건축물미술작품 인지도와 기여도에 대한 설문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났으며 강남구(3.23)의 주민들이 문화예술 향유를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고, 중구(2.61)이 가장 낮았다. 공공미술이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평균이 보통이하(2.66)이며, 강남구(2.80)이 가장 높았다. 또한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공공미술이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인식할수록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도시경관 실태에 대한 만족도는 강남구(3.38)에서 가장 높았으며, 중구(2.84)에서 가장 낮았다. 도시경관을 위하여 공공미술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보통이상(3.34)이고,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거주지역의 도시경관 만족도가 높을수록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건축물미술작품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2.1%였다. 건축물미술작품이 문화예술에 기여하는 바는 보통이하(2.76)이며, 문화예술 향유수준이 높을수록 건축물미술작품이 자신의 문화예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넷째, 건축물미술작품이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3.67),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경관 개선 기여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주지역의 도시경관 만족도와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경관 개선 기여도 인식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향유정도가 높고, 공공미술이 문화예술과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건축물미술작품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건축물미술작품이 도시경관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였다.

지역별 주민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 건축물미술작품 충분지역인 강남구의 주민들이 문화예술 향유정도가 높았으며, 공공미술이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였다. 도시경관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으며, 건축물미술작품이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였다. 강남구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용 건물과 공동주택이 복합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므로 주거민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모두에서 쉽게 건축물미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

둘째, 노원구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구이지만,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4개 구 중 3번째).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인지율은 비교적 높으나(4개 구 중 2번째), 건축물미술작품의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에 대한 기여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4개 구 중 3번째).

마지막으로, 중구는 누적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금액이 가장 많으나, 중구민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에 따르면 문화예술 향유정도와 도시경관 실태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건축물미술작품 인지정도도 가장 낮다. 이는 중구의 설치 빈도는 많으나 주거지역보다는 업무지구에 주로 설치되어있어, 거주민들은 건축물미술작품에 접근과 노출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표 3-12>.

표 3-12 강남구, 강북구, 노원구, 중구의 인구와 미술작품 설치현황

	인구 (명)	설치 미술작품 수 (개)	설치 미술작품 금액 (원)
강남구	575,196	314	9,369,751,845
강북구	335,798	49	1,509,079,000
노원구	584,809	96	983,745,000
중구	128,786	210	18,621,980,000

제 4 장 해외 공공미술 제도

제 1 절 공공미술 전문가 인식조사

1. 북아일랜드 정부기관(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18)]

2013년 5월 7일 오전 11:30부터 한 시간 동안 Belfast시의 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 1층 접견실에서 Public Art 담당공무원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북아일랜드의 법제에 의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공공건축물에 의무적으로 미술품을 설치하는 것과 기금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2011년 이후의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북아일랜드의 공공미술 분야의 발전은 1990년 이전까지 느렸지만, 1995년부터 국립복권기금의 유입과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 증대로 많은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새로운 공공건축물의 건축이나 증축 시 문화예술위원회에 공공미술작품을 의뢰하거나, 건축비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부하여 대단지 프로젝트의 일부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공건축물 앞에 조각을 세우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반영한 작품이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선호하고 형식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선호되지 않고 있다. 공공미술의 여러 형태 중 조각이 시민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현대미술이나 서로 다른 형식으로 된 미술품이 결합된 형태의 작품도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와 유사하며,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 사이트(encourage tourism)에서 설치된 미술품 관련정보 얻을 수 있다.

기금을 사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초기단계부터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고 프로젝트 설계가가 공공미술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예를

18) www.artscouncil-ni.org 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의 홈페이지 (2013.3.30.접속), 공공미술 제도 및 안내서적, 인터뷰 내용 정리

들어, 의료단지 개발이나, 도시나 농촌의 재생 프로젝트 등에 사용된다. 공공미술의 형태로,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비디오, 일시적인 미술품, 미디어 작품, 공예, 응용 미술 등을 인정한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수수료, 예술가 선택과 계약 등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조언한다.

기금 사용의 목적은 예술가에게 지역개발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시와 농촌 재생에 기여하고 공공 영역 구축, 지역 사회의 참여와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 시민에게 예술에 쉽게 접근하는 기회제공, 지역에 대한 관심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것 등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은 주로 기금운영재단과 로터리 티켓 판매의 경로로 모이고, 개인 기부는 드물다. 북아일랜드 국민들은 아동, 노약자를 위한 복지에 관심이 많고, 공공미술에 정부기금을 할애하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주로 의료시설과 연결하여 공공미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공미술을 이용한 건강관리는 환자와 환자가족의 고통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Nathaniel, 2013, pp. 197-209).

북아일랜드의 공공미술 정책은 장소적합성(fit to space)을 강조하여 배경(Background)에 대해 많은 정보공유 후 하기 때문에, 작가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새로운 공공미술 프로젝트기 시작될 때 공모를 통해 예술가를 선정한다. 작가 선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담당부서 위원, 지역사회 대표, 지역 예술가, 엔지니어 등 기술자, 공공미술 프로젝트 계획가 등 5~8명으로 구성되며, 도시재생(regeneration) 규모일 때 공공미술 프로젝트 계획가도 참여한다. 3번 이상의 회의를 통하여 작가를 선정하며, 후보 예술가들에게 설명을 들은 다음 각각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상의한 후 작가를 선정한다. 선정된 예술가가 지역출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지만, 예술가는 반드시 역사유물·유적과 지역사회의 역사를 이해해야한다.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작가와 가격을 결정하지만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때때로 중앙정부 주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지방정부가 주관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등 지역 중심적이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예술가들은 공모 등의 도전(challenge)를 통해, 의회나, 지역·중앙정부(government bodies)는 위원(commissioner)의 자격으로, 지역주민(Citizen)은 프로그램의 참여자로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과 시민의 예술향유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는 공공미술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정적인 문제들을 새로운 예술작품 설치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북아일랜드에서 공공미술정책의 목적은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과 시민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to Public Art)을 향상하는 것이다. 북아일랜드 정부는 공공미술에 대하여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국가이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2. 네덜란드 공공미술 작가(Public Art-Artist)

2013년 4월 28일 오후 7:35부터 한 시간 반 동안 Amsterdam시의 Dam Sq. 카페에서 Public Art작가 Henk Hofstra를 그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면담 조사하였다.

네덜란드의 공공미술 영역은 퍼센트법에 의한 공공건물의 미술품설치와 지방 정부·의회, 민간단체 등이 기금을 출연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다. 1951년에 퍼센트법이 의무사항이 되었고, 주(state)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보수 시 전체 건축예산의 0.5~2%를 시각 예술에 지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Rijksgebouwendienst(정부 건축 기구)는 네덜란드 시각 예술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지난 40년 동안 2,500개 이상의 작품이 설치되었고, 최근 들어 실험적이거나 개념적인 작품이 증가하였다. 퍼센트법 적용의 의무는 Rijksbouwmeester(정부 건축 위원장)에게 있고, 시각 예술분야 자문단이 그를 돕는다. 모든 예술위원회의 수립과 구현은 건축가, 프로젝트 메니저, 건물의 (미래)사용자로 구성된 실무 그룹과 자문위원이 감독한다.

Henk Hofstra는 주로 소, 꽃, 풍경 등 시골경관을 그렸던 네덜란드 예술가였다. 그는 예술가가 도시경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일념

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행동에 옮겨 네덜란드의 몇몇 도시들에서 대규모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4-1 The Blue Road
* 자료: http://www.henkhofstra.nl Henk Hofstra 홈페이지(2013.3.19.접속)

The Blue Road<그림 4-1>는 2007년 4월 네덜란드의 Drachten시내 도로를 물을 상징하는 파란색 물감으로 칠한 프로젝트다. 길이 1000m, 폭 8m크기였으며, 과거에 강이었던 도로를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곳은 1960년대까지 농업지역이였고 농장들에서 공장으로 우유·치즈 등의 유제품을 나르는 통로로 수로(canal)을 사용하였다. 점차 집들이 늘어나고 공장지역이 확장되면서 마을은 도시를 이루었고, 수로를 덮어 도로를 만들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랐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았다. 시민

들의 도시경관과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전 강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프로젝트 시작 10년 전부터 “water again”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었고, 시장을 만나 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권유하였다. 민간기업, City Council, 민간단체의 기금출연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페인트 약 4000ℓ가 사용되었고, 일주일동안 약 €75000의 자금으로 20명의 예술가가 협업하였다. 일부 구간에 “WATER IS LIFE”라는 메시지를 썼는데 이 프로젝트는 당시 구글어스(googleearth)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여 이슈가 되었다. 실제로 2008년에 일부구간에 수로(canal)가 복원되었다. 이 작은 도시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인해 일주일동안 약 5만 명이 방문하였다. 이 사례에서 공공미술은 올림픽보다 훨신 적은 돈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시를 알릴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Miereninvasis<그림 4-2>는 지역의 랜드마크인 De Lwei 극장 50주년 기념프로젝트로, 2010년 시의 기금출연과 정책적 지원으로 약 3주간 진행되었다. 재작기간을 3단위로 나누어, 개미를 각각 50마리, 50마리, 400마리씩 밤에 그렸다. 이 사례 또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으나, 비밀리에 진행하였고 매일 조금씩 늘어나는 개미떼가 이슈가 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작은 도시에서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변화를 통하여 도시의 모습이 재창조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도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도시에 생기가 넘쳤다.

Art-Eggcident<그림 4-3>는 네덜란드 북쪽 Leemarden시에서 진행되었다. 8개의 큰 달걀을 제작하였고, 한 개의 직경이 약 100ft이다. Wilhelmina 광장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광장 중 하나인데, 20여 년 동안 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었다. 그런 정황들을 “Like talking chickens” 라고 생각하여 달걀의 모티브를 착안하였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으나, 몇 주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기 때문에 특히 상공인들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민간 기업과 시의 기금출연으로 시행되었으며, 작가는 기금출연 주체들과 4개월에 거쳐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회의를 진행하

였다. 현재 그 자리에는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이 들어왔다. 즉,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20년간 논의되었던 도시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관광유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며 시민들이 공공공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림 4-2 Miereninvasis

그림 4-3 Art-Eggcident

* 자료: http://www.henkhofstra.nl Henk Hofstra 홈페이지(2013.3.19.접속)

그 외, 현대사회의 자본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담아 시행한 Above water, Carcreditcrisis가 있다. Above water,는 2010년 6월 Leystud시에서 실시된 프로젝트이다. “Global Financial Crisis“를 비판한 작업으로, 물에 잠길 것 같은 일반인들의 머리를 금융인이 밟고 올라 서 있는 형상이다. Carcreditcrisis는 “worldwide credit crisis”를 비판한 작업으로 Rotterdam시의 Ahoy광장에 19대의 빨간 차와 1대의 파란차를 설치하였다. 대부분의 사람이 대출(loan)로 차를 구입하거나 대여(rent)하는 등 진짜 자신의 차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음을, 즉 현대사회는 자본을 추구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은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은 예술가들이 예술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야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술이라는 매체는 시민들의 거부감이 적고, 사회현상을 표현할 수 있고 공공의 장소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의 작

품들은 예술이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매체가 아니라 직접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매체임을 보여준다. Open Eyes! 예술가들의 소명은 일반인들의 환상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프로젝트들은 민간기업·단체, 지방정부·의회의 기금출연을 이루어졌다. 민간과 관의 공동기금출연은 기업홍보와 이미지 쇄신을 요하는 기업에 이익을 주고, 정부의 시민복지와 도시경관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의 협업은 예술가와 공공미술 관련 인력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산업과 상업을 발달시킨다.

그의 프로젝트들은 예술가의 사회문제에 대한 표현과 실천의 좋은 예이다. 그는 시민들과 기부자들을 설득하고 인식을 전환시키며, 이를 위해 예술이 필요하고 예술가들이 도시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의뢰인과 기금출연자들(Government, Council, 회사 등)은 작가가 계획하는 프로젝트들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다는 식으로 의구심을 품지만, 예술가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민호응이 있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3. 독일 공공미술 단체(Public Art Lab., PAL)[19]

2013년 4월 29일 오후 2시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Berlin시의 Public Art Lab. 사무실에서 PAL가 진행한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연합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과정, 주체, 공공미술의 형태와 특징 등에 관해 Public Art Lab. 대표와 직원들을 면담하였다.

먼저, 독일의 공공미술은 사회기반시설 건축물에 미술품을 설치하는 것과 정부, 민간, 예술가 등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다. 독일에서 퍼센트법(Percent for art)은 Art in Architecture의 개념에 가깝다. 독일에 법으로 규정된 퍼센트법은 없으나, 유사한 기능을 갖는 연방 지침(federal guideline)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연방국가(federal state) 또는 도시 수준(city level)에서가 아닌,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al)프로젝트 건축물에 적용된다. 일부 연방 국가와 도시는

19) http://www.publicartlab-berlin.de Public Art Lab.(PAL) 홈페이지 (2013.3.20.접속)

이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였다.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건축예술(Kunst am Bau)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어야한다고 규정하지 않지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위원회는 연방예술가협회(Bundesverband Bildender Kunstlerinnen und Kunstler)와 긴밀하게 작동한다. 1980-90년대 공공미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공건물 건축비의 3~4%를 조각품을 설치하는데 사용한다. 21C에 접어들면서 공공미술은 기념조각을 설치하는 개념보다는 프로그램을 동반한 예술 활동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

PAL은 베를린(독일)에 기반하고 있는 공공미술 민간단체이다. 주로 문화의 다양성과 변화를 여러 분야의 학제들과 연결하여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여러 도시들의 연결을 통해 예술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공공의 장소에 실현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창조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Mobile Museums<그림 4-4>은 예술(Art)과 기술(Technology), 문화(Culture)의 결합물이다. 예술가의 박물관이 여행을 한다는 주제로, 박물관이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일시적인 형태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 4월~6월, 베를린을 시작으로 비엔나와 바르셀로나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이다. 예술가 각각에게 재활용 PVC sheet(최대 10㎡길이, 4~6명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제공하여, 독자적이면서 접근성 있는 구조물을 만들었다. 인터랙션 디자인(Interaction Design)이며 밖에서는 볼 수 없고, 각 작업마다 형태가 약간씩 다르다. 매일 프로그램이 바뀌고, 어떤 경우는 사방으로 오픈할 수 있게 만들어 오픈스페이스와 결합모듈 시스템으로서, 박물관 건축·공간·예술 작품이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하였다.

2008년 Media Facades Festival<그림 4-5>은 "Myths and Potentials of Media Architecture and Urban Screens"를 주제로, 스크린이 상업광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임을 보여주었다. 도시의 스크린(urban screens)과 미디어 벽면광고(media facades)에 기초한 베를린의 문화적 잠재력에 대한 연구로서, 미디어화된

건축입면을 사용한 컨퍼런스와 전시, 스크리닝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시민들과 지역사회를 표현한 이미지들이 많았고, 이는 지역사회의 정체성 실현에 도움이 되었다. 페스티벌 진행과정과 결과를 인터넷, dvd로 제작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였다. 5개 도시에서 진행하였으며, 그 중 2개 도시에서는 한 도시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다른 도시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에 이미지가 구현되기도 하였다.

그림 4-4 Mobile Museum

그림 4-5 Media Facades Festival

* 자료: http://www.publicartlab-berlin.de Public Art Lab.(PAL) 홈페이지(2013.3.21.접속)

Video Painting: The Bridge는 인터랙션 설비(interactive installation)[20]를 사용하여, 미국인 예술가가 2013년 4월 22~23일 Goethe Institut Conference에서 시연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민들 일상 환경을 찍은 영상으로, 공공공간(Public Space)의 경관과 시민들의 일상 환경을 담고 있다. PAL와 지역 라디오방송국이 협업(Collaboration)하였는데, PAL에서 미디어를 구현하고 메시지전달을 위한 연결을 지역방송국에서 담당하였다.

---

20) 류다혜, 이규백(2011)에 의하면, 인터랙션이 인간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지식, 사상, 감정, 의견 등을 공통화 또는 공유화하는 행동이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를 제공하는 매체를 인터랙티브(interactive)라 말하는데, 오늘날 인터랙티브의 개념은 영상, 음향 등을 통해 체험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터랙티브의 가장 중요한 기능한 상호작용으로, 행동적인 관계를 극대화하며 소통과 관계적 체험을 유도한다(pp. 165-173).

요즘 공공미술은 협업이 많다. 공공미술자체가 많은 분야의 집합장이므로, 여러 분야가 기획(Concept idea)단계부터 같이 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있나, 어떻게 만나나, 협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등 파트너개념이 중요하고, 이 파트너 중 하나는 정부(국가, 지방 정부, 의회 등)이다. 각 분야별, 주체별 협업도 중요하지만, 유럽에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업이 많다. 유럽에는 전문분야 작가들의 커뮤니티가 있고, 그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규모는 한해에 약 8~10백만 유로이다. 각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지역작가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1:1의 비율로 협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명작가를 초빙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큐레이터와 일한다.

유럽연합에서 큐레이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도 강하다. 프로젝트간의 연결을 돕고, 기금 집행과 사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작품수집가 역할도 한다. 그들은 승인에 관련된 법률(Permission Rule)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각 프로젝트의 중계자역할은 PAL 또는 큐레이터가 수행한다.

PAL는 작업결과물만큼이나 진행과정(How to do it's process)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각 나라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정부기관과 직접 연결해줄 지역 큐레이터를 쓴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나 시민의식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동유럽은 정치적이며 네덜란드는 프로젝트 승인(Permission)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동업자(Worldwide Partner)의 협력이 필요하며, 도시계획가, 건축가와 함께 사회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를 위한 프래임워크는 매년 다르게 구성되는데, 참여자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되며 반드시 공공공간에서 진행되며 상업적 목적은 배제한다.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부 기금출연 기관들[21]과 함께 일한다.

---

21) European Commission/Culture 2000, European Cultural Foundation, International Visegrad Fund, Stability Pact for South Eastern Europe, Institut fuer Auslandsbeziehungen IFA, Forum Goethe-Institut, National Cultural Fund of Hungary, Ministry of Cultural Heritage of Hungary, House of Future Budapest, Kulturfruehling

제 2 절 Percent for Art 제도 비교[22]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Percent for Art)이란, 대규모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비의 일정비율을 예술품 설치에 할애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 정부는 적극적으로 퍼센트법을 권장하고, 이를 통하여 건축물 인근이나 공공장소에 미술품을 설치한다. 공사비 1%적용이 표준이지만, 지역마다 다르다. 때때로 비용이 예술작품 설치를 위해 지급되기 전에, 관리·유지비용이 정해진다. 많은 지방정부에는 기금이 있는데, 요즘 들어 미술품설치를 고집하기보다는 일시적인 공공미술 작품과 관련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유럽 국가들, 호주,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 북미의 많은 주와 시에는 각자의 퍼센트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퍼센트법을 최초로 시행한 프랑스, 우리나라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뉴욕·시카고, 우리나라제도처럼 민간개발을 대상으로 퍼센트법을 적용하는 캐나다의 토론토, 자치구별로 정책을 가지고 있는 호주 시드니의 퍼센트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도적용 행정단위가 나라별로 달랐고, 그로 인해 연구 대상지들의 행정단위 위계가 같지 않다.

1. 프랑스[23]

프랑스의 환경미술 진흥정책 제도는 퍼센트법과 공공미술 주문기금[24]으

Budapest, City of Bratislava/Ministry of Culture of Slovak Republic 등

22) 부록 2. 참조

23) 프랑스 퍼센트법은 아래 문헌들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류선정(2009) 전게서, pp.45-46,http://www.snapcgt.org/IMG/pdf/rapport_1_artistique.pdf(2014.5.29.접속),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Politiques-ministerielles/Le-un-pour-cent-artistique(2014.5.30.접속),http://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5795073 (2014.5.30.접속)

24) 공공미술 주문기금(Fonds d'aide à la commande publique)은 자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지원, 심의를 통한 공공미술의 질적 수준 향상, 공공미술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에 창설되었다. 자치단체의 공공미술 주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문화부 예술국에서 기금을 관리한다.

로 구분된다.

퍼센트법(Le 1% artistique dans les constructions publiques)은 1936년에 법안을 마련하여 1951년부터 예술적 목적(전통을 상기시키고 건축 내에서 여러 분야의 예술 활동을 통합), 교육적 목적(예술의 감상기회 부여), 경제적 목적(예술가의 경제활동보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퍼센트법을 통하여 현재까지 4,000명 이상의 예술가와 12,3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공공건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의 약 1%를 의무적으로 건축물을 위한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위원회에 출연해 사용하는 것이다. 공공건물에는 총 공사비의 1%, 주거용 건물에는 0.5%를 적용하여 벽화, 조각, 또는 건물주위의 미적 환경조성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의 교육시설에서 시작하였으며, 1%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종류를 확장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1972년에서 1981년까지 국립학교와 건설관련 부서들-외무부, 농경부, 문화부, 국방부, 경제 · 재무부, 환경부, 산업부, 내무부, 체육부, 법무부, 우정성, 교통부, 노동부-로 적용이 확대 되었다. 지방 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1983년 프랑스 정부에서 건설권한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 건축비용의 1%를 조형예술품 설치에 투자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는데 현재 15개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때는 공공미술품을 거대 장식으로 정의하였지만, 그 개념이 예술 창작물로 확장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들이 나타났다. 문화부는 1996년에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예술작품의 창작을 위하여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건축 설계의 초안이 그려지는 과정부터 조형예술품 준비위원회에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 등을 포함한 건축 관계자 모두가 동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2년 4월 개정법(시행령 2002-677)의 내용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퍼센트법을 분석하였다. 법령에 퍼센트법 적용 건축물의 종류를 공공기관, 국방부처, 학교로 명시하였다. 산업 상업 시설, 일부 국방 부처, 공공기관의 인테리어는 제외하며, 의료 건강관련 공공건축물은 설치의무가 없다. 또한, 지방 자치제에 의해 지역 대학, 고등학교, 시립 도서

관 등도 설치 의무 대상이다. 병원, 학교, 공공건축물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전체 예산 계획서에 퍼센트법에 의한 미술품 설치 예산을 포함해야한다.

공공미술의 형태는 회화, 조각, 스트리트 퍼니처, 조명, 새로운 미디어, 비디오, 디자인, 그래픽 등과 사운드 디자인, 플랜트 디자인 등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고 반드시 설치 장소에 어울려야한다.

미술품 설치 예산은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한다[25]. 미술품 설치 예산 30,000유로 미만의 프로젝트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고, 30,000유로 이상의 프로젝트는 지역위원회가 심사한다.

운영위원회는 계약자와 건물 양수인, 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소집할 수 있고, 문화부의 지역 이사회, 건축물이 있는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 지사, 대학의 경우 교육 이사, 문화청 이사, 대표 및 외부 구성원을 포함하며 5년 동안 임명된다.

예술위원회는 건축주(기관), 건축가, 건축물 사용자, 지역문화 담당 이사(DRAC, Re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 예술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건축주는 후보 예술가들의 안을 예술위원회와 협의 한다(떨어진 예술가는 지원에 사용한 자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선택된 예술가는 계약 실행, 미술작품 설치,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한다.

퍼센트법의 절차는 미술 계획수립, 심의, 제작·설치의 3단계로 구분된다. 건축가가 미술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는 작품의 가격에 의해서 심의기구가 다르게 이루어진다. 승인된 작품은 건축가와 작가간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다. 건축주가 작품 유지·관리의 의무는 가지며 관리대장을 만들고, 출판물, 비디오, 사진 등 홍보물을 제작한다. 홍보물 제작을 위해 미술장식비용의 10%를 예치해 두었다가 사용한다. 작가는 작품에 대한 도덕적

---

25) 전체건축비가 2,550,000유로일 때 미술품 설치 예산은 최대 25,500유로이다. 전체건축비가 2,550,000~6,300,000유로라면 25,500유로에 추가금(최대 12,500)가 포함되어 미술품 설치 예산은 최대 3,8000유로이고, 6,300,000~12,700,000유로사이라면 3,8000유로에 추가금(최대 13,000)가 포함되어 최대 51,000유로이다. 12,700,000유로이상일 때, 51,000유로에 추가금(최대 13,000)가 포함되어 64,000유로이다. 비용 산출시, 이동에 든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수수료는 면세된다.

권리를 가지고, 작업완료 후 최종 작업료를 지급받는다.

프랑스 퍼센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중심의 프로그램운영과 공공건물위주의 작품설치 등 철저하게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다. 도시계획 자체가 건축물의 역사성과 전통적인 의미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새로움을 시도하고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둘째, 건축비의 1% 이하를 적용한다. 셋째, 작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조형예술전문가와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넷째,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조형예술자문관을 두고 있다. 다섯째, 작가선정 시 공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주에 의한 자발적인 관리프로그램과 홍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은 공공미술에서의 공공의 역할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2. 미국 뉴욕[26)]

미국의 공공미술 사업은 1930년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경제공항기 '실직예술가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된 노동진흥청(Works Process Administration)의 연방예술 프로젝트(Federal Arts Project)와,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산하의 순수예술과(Section in Fine Arts)에서 '공공건물의 미적 향상'을 위해 이루어진 공공미술 프로젝트,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류선정, 2009, pp.39-40). 1965년 국립예술기금(Nation Endowment for the Arts: NEA)을 미의회가 승인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공공미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공공장소의 질을 높이고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하고자하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 Program: AiPP, 1967)은 민간과 지방지차단체의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일정한 심의를 거쳐 매칭 그랜트(Matching

26) 뉴욕시 퍼센트법은 아래 문헌들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Eleanor Heartney, Adam Gopnik(2005) City Art New York's Percent For Art Program. New York: Merrell, New York City(2011) 『Best Practice: Percent for Art Program』, http://www.nyc.gov/dcla (2014.4.30.접속)

Grant)방식으로 작품제작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기존 모더니즘 미술을 공공장소에 맞는 크기와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플럽 아트(Plop Art)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술가들로 구성된 작가선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지역의 요구보다는 예술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미술이 공공장소에 도입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프로그램을 도시재개발이나 활성화의 주요수단으로 삼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연방정부차원의 공공미술 지원제도로 공공시설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GSA)이 주관·시행하고 있는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 Program: AiA, 1963)은 연방건물의 미적 향상을 위해 건축비의 0.5%를 공공미술에 할당하도록 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1930년대의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산하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같은 맥락 하에 있고 우리나라의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와 비슷하였다. 1963년 봄에 시작되었으며, 건축물 건설 프로젝트에 의해 예술품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순수예술위원회(The Commission of Fine Art)에서 예술가 리스트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GSA에서 선택하였다. 1966년 동남아시아 전쟁으로 인한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 종료되었으며, 4년 동안 40개의 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학교에 있는 조각가들은 정부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다(Wetenhall, 1993, p.1).

건축에 있어서 예술품설치에 일정비율의 예산을 사용하게 한 최초의 법령은 1959년 필라델피아에서 제정되었다. 건축비의 1%를 술수미술(Fine art), 즉 조각, 벽화와 기금에 의한 설비(amenity), 요철 있는 벽(textured wall), 모자이크, 수영장(pool), 타일 기둥(tiled column), 무늬 있는 바닥(patterned pavement), 격자모양으로 만든 작품(grill work)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퍼센트법에 의한 공공미술작품들은 필라델피아 중심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하고, 랜드마크로서 공공공간에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퍼센트법은 필라델피아 중심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하였다. 1980년대 이후 공공미술프로그램을 채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가 증가하였으며 퍼센트법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예술 시장의 중심지이자 공공공간에서 문화예술로의 접근성이 좋은 뉴욕과, 공공미술이 도시공원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경관 개선에 성공적으로 이바지한 시카고의 퍼센트법을 살펴보았다.

뉴욕의 공공영역에서 펼치는 정책들, 예를 들면 미술은행이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관련법의 제·개정, 수입관세, 상속세 같은 세제 개편 등 관련 정책들은 미술시장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김보름, 2010, p. 89), 퍼센트법은 미술 시장의 발전에 기여함고 동시에 시민들이 야외공간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하였다.

뉴욕시(The City of New York) 문화국(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이 소관하는 퍼센트법은 세계문화 수도인 뉴욕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과 가시성을 증진한다. 공공미술은 지역사회의 특징을 표현하며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공공장소는 뉴욕시민들과 방문객들이 박물관이나 겔러리에 있는 작품들을 외부에서 즐길 수 있게 한다. 퍼센트법에 의한 작품설치는 장소-특정적이고, 회화, 모자이크, 유리, 섬유, 조각, 기반 시설이나 건축물에 통합된 작품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뉴욕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예술가에게 작업을 위탁한다. 이를 통해 설치된 작품은 예술이 어떻게 도시의 건축물들과 공공공간에 통합되는지를 보여준다.

퍼센트법은 1982년 시장 Edward I. Koch에 의해 시작되었고, 뉴욕시 이사회가 뉴욕시가 투자한(City-funded) 건축 프로젝트 예산의 1%를 도시 시설에 미술품을 설치하는데 지출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983년에 시작되었고, 이 제도에 의해 현재까지 약 300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41,000,000달러이상이 사용되었다. 퍼센트법으로, 5개 자치구(Manhattan, the Bronx, Brooklyn, Queens, Staten Island)에 있는 시 소유(City-owned)의 건축물에 순수 예술가들의 예술작품을 설치·수집하여 특별함을 부여한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설계 과정에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시민의 예술향유와 지역사회 건축물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법65인 퍼센트법(Percent for art law)은 새로운 건축이나 재건축

비용의 약 1%를 예술에 사용하는 것이다. 예산에는 디자인 비용, 비상, 제작, 설치, 교통, 보험 비용 등 예술가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이 포함되며, 수수료 범위는 5만~40만 달러이다.

시 소유 공공건물에 대하여, 건축비용이 2천만 달러 이하일 때는 최소 1%를, 2천만 달러를 초과할 때는 초과비용에서 0.5%를 적용한다. 공공건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공 공간(학교, 공원, 정수 처리장, 정거장 시설, 산책로, 도서관, 보육시설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한다.

심사위원(panel)은 뉴욕시장, 예술위원회나 각 자치구청장(Borough President's Office), 지역사회 자문단(Community Board) 등이며, 그 중 하나는 반드시 예술가이여야 한다. 시각 예술 전문가와 큐레이터, 이사, 비영리 갤러리 직원, 시각 예술 관리자, 미술 비평가, 작가, 미술사, 공공미술 전문가 등도 포함한다. 예술 전문 위원들은 지역사회나 자치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시각 예술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위원으로서 예술가 추천, 작품의 부지 선정과 개념 논의, 예술가 선정(특정 작품을 구입하거나 미술품 복원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의 책임이 있다. 예술가 선택 과정은 일반적으로 두 번의 회의로 이루어진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여러 안을 검토하고 최종 후보들을 선택한다.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종 후보를 인터뷰하고 결정한다. 위원들은 4~6시간동안 회의를 지속할 수 있고 시간은 사전에 협의하며, 문화국이 150 달러의 사례금을 지급한다.

지역사회 자문단은 다섯 자치구에서 임명한다. 자치구청정이 지명하는 50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있고, 그 중 절반은 시의회의원이다. 현재 맨하튼(Manhattan) 12명, 브롱스(Bronx) 12명, 브룩클린(Brooklyn) 18명, 퀸즈(Queens) 14명, 스테이튼 아일랜드 .(Staten Island) 3명, 총 5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에게 법률을 만들거나 적용하는 등의 권한은 없으나, 자문 자격으로 참여한다. 토지 이용 계획, 예산 집행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정부 기관과 협력 등에 대한 일을 처리하는데, 그들은 지역과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모든 일과 연관된다.

뉴욕시 퍼센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 소유 건축물에 제도를 적용하며, 공공건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공 공간에 미술작품을 설치한다. 둘째, 건축비의 약 1%를 적용한다. 여기에 작품에 관련된 비용 외에, 교통이나 보험 비용도 포함된다. 셋째, 심사위원에 5개 자치구의 구청장과 지역사회 자문단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작가와 작품선정에서도 강조하고 공공미술의 장소-특정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의 건축물과 공공공간에 통합하고 있다.

3. 미국 시카고[27)]

시카고시는 지역과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예술표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공공장소에 예술작품을 설치함으로써 공공건물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시카고문화계획(Chicago Cultural Plan)의 일환인 퍼센트법(City of Chicago Percent-for-Art Ordinance)에서 미술작품은 매체나 재료의 구애가 없고, 모든 시각미술의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위탁·선물 받았거나 시카고시가 구입한 것들을 말한다.

모든 공공건물은 시카고시를 위해 또는 시카고시에 의해 공공이 접근할 수 있게 건설·개조하며, 건축비(토지와 건축물 설계비, 건축관리와 엔지니어링비, 비품, 가구, 도로, 하수구 등 제외)의 1.33%를 공공미술 프로그램 기금(Public Art Program Fund)에 예치한다. 공공미술 위원회(Public Art Committee)가 공공미술 프로그램 프로젝트을 계획하고, 미술작품을 공공공간에 설치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한다. 문화국(Special Events and Cultural Affairs)에 공공미술 프로그램 프로젝트들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문화국은 공공미술위원회와 자문위원회(Project Advisory Panel)와 협의 한 후 작품을 구입해야한다.

오직 미술작품의 위탁과 구매, 공공미술 프로그램의 관리, 미술작품 유지·관리를 위한 기금이 만들어진다. 미술작품 유지·보수와 일반관리에 기금의 약 20%가 사용된다.

---

27) 시카고 퍼센트법은 아래 문헌들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The chicago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and special events(2013)『The Chicago Public Art Guilde』 http://www.cityofchicago.org/dcase (2014.7.30.접속)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의 17명으로 하고, 문화국의 위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문화국(Dept. of Cultural Affairs)의 위원, 항공국(Dept. of Aviation)의 위원, 행정지원실(Dept. of General Services)의 위원, 계획 및 개발국(Dept. of Planning and Development)의 위원, 교통국(Dept. of Transportation)의 위원, 시카고시의회의 특별행사와 문화위원회의 의장, 공공건물위원회의 이사, 문화국의 자문위원, 시카고 공원지구(Chicago Park District)의 대표 2명, 시카고 교통국(Chicago Transit Authority)대표, 경관위원, 시카고 공립학교(Chicago Public Schools)의 대표, 마지막으로 지역 예술가, 박물관 큐레이터나 디렉터, 예술 후원자, 학술위원 중 문화국의 대표 의해 선택된 4명. 위원들은 2년 조건 또는 후임자가 정해질 때 까지 임명되고, 1년에 적어도 4회 이상 모인다.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국을 통하여 수시로 공표하고 각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는 등 정책을 이행해야한다. 둘째, 분기별로 제안 된 건설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공공미술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확인해야한다. 셋째, 기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시의회의 특별행사와 문화국에 연도별로 보고 해야 한다. 넷째, 구입·심의했거나 시에 기부된 미술작품의 설치장소를 결정한다. 다섯째, 공모, 초청, 직접 선택 등의 방법으로 선택된 작품설치를 위한 세부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행정지원실과 협력하여 공공미술 프로그램 컬렉션에 미술품을 유지해야한다. 일곱째, 선택된 예술가와 작품에 대한 권고 사항을 검토해야한다. 여덟째, 예술가와 문화국에 의해 위탁·구입된 작품의 최종선택을 한다. 아홉째, 이전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예술가가 합당한 작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열째, 기금을 받은 조형물 복원 및 보존에 대한 보존분과위원회(Conservation Subcommittee)의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선택해야 한다.

공공미술 위원회는 문화국의 2명, 시카고 공원지구의 대표 2명, 예술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 된 비영리 조직의 문화국 감독관에 의해 선택된 1명, 마지막으로 지역 예술가, 박물관 큐레이터나 디렉터, 예술 후원자, 학술위원 중 문화국의 대표 의해 선택된 4명중 6명으로 구성된

보존분과위원회를 임명한다. 4년 조건 또는 후임자가 정해질 때 까지 임명되며, 1년에 적어도 2회 이상 모인다. 보존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조형물 복원·보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우선수위를 매기며, 작품 복원과 보전에 대하여 공공미술위원회에 권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공공미술 위원회는 1만 달러이상의 공공미술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단(Project Advisory Panels)을 임명한다. 총감독,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부서나 야외환경 개선 프로젝트 조정하는 부서에서 1명, 공공건물이나 야외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프로젝트 건축가 1명, 공공미술 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2명의 예술단체 회원, 공공건물이나 야외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2명, 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부서나 야외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부서에서 1명 등과 공공건물이나 야외환경 개선 프로젝트가 시행중인 구(ward)의 구청장(alderman)이 선출한 1명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제도의 지침을 수행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구한다. 그리고 예술가와 위탁하였거나 시가 구입된 미술품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위해 공공미술 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공공미술 위원회, 보존 분과위원회, 자문단은 무료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에서 고용한 위원회의 회원은 연간 예산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보상받아야 한다.

시카고시 퍼센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의 대상을 공공건축물로 한정한다. 둘째, 건축비의 1.33%를 공공미술 프로그램 기금에 예치하며, 이 기금은 오직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다. 미술작품의 위탁과 구매, 공공미술 프로그램의 관리, 유지, 관리 등에 사용되며, 일반관리에 전체 기금의 20%를 사용한다. 셋째, 위원회 구성의 특이점은 문화국과 예술전문가 외에, 항공국, 교통국, 특별행사와 문화위원회의 의장, 공공건물위원회, 공원지구 대표, 경관위원, 공립학교 대표 등 프로젝트 및 대상 부지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해집단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위한 세부지침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1만 달러이상

의 프로젝트에는 자문단을 임명하는데, 여기에 대상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구청장이 포함된다.

4. 캐나다 토론토[28)]

캐나다에서 공공미술의 적용은 오랜 시간에 거쳐 천천히 진행되었다. 1960년 이후 공공미술 작품에 도자기, 직물, 유리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전시 센터, 대학캠퍼스, 공항 등을 건축하는데 예술을 통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1976년 몬트리올 엑스포(EXPO 67 in Montreal)와 1976년 올림픽을 위하여 도시와 지하철 시스템을 정비하였고 그에 따라 공공미술작품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공공미술은 단순한 장식의 형태였다.

최근 들어 정부차원에서 건축가, 엔지니어, 예술가의 협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람과 환경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고, 도시경관을 새롭고 활기차게 한다. 지난 20 년 동안 캐나다의 공공 미술은 크게 변화하였고, 그 기능·형태가 확장하였다. 공공미술과 기념비의 형태는 거리 예술, 장소-특정적 예술, 토지 예술, 그리고 건축, 회화, 사진, 공연 예술, 지역사회 예술,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과 같은 형태의 현대미술을 의미한다.

공공미술 영역의 변화는 사회변화와 관련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예술단체 등에서 공공미술 후원을 확대하고 있다. 1978년부터 연방공공미술국(The Federal Department of Public Works)에 의하여 모든 정부 건물에 미술품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연방정부는 공항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정부 개발에서 대형 미술품의 매각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 캐나다의 몇몇 도시에서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제정하였다. 공원, 광장, 정부 개발시설 등을 건설함에 있어서 일정비율(보통 1%)을

---

28) 토론토 퍼센트법은 아래 문헌들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Torinto City Planning(2010) Percent for Public Art Program Guidelines. Toronto Urban Design, Gerin, Annie, James S. McLean(2009) Public Art in Canada: Critical Perspectiv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Scholarly Publishing Division, http://www.thecanadianencyclopedia.ca (2014.6.22.접속)

예술에 할당하는 것이며, 일상 환경에서 예술을 향유 할 수 있게 한다. 많은 지방정부는 공공미술기금을 관리하며, 기금으로 학교, 병원 등과 같은 시설에 공공미술을 설치한다. 할리팩스(Halifax)시는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만든 최초의 도시이다. 밴쿠버(Vancouver), 토론토, 캘거리(Calgary), 에드먼튼(Edmonton) 등의 도시에서 민간 개발자에게 개발 프로젝트에 예술에 1%를 할당할 것을 권장한다. 이 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건물이 필요 때 건축주가 건축비의 약 1%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데 사용해야하고,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자가 최대 금액을 협상할 수 있지만 상한선이 없다.

본 연구는 캐나다 제 1의 도시 토론토를 연구대상지로 한다. 토론토의 공공미술은 공공영역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디자인을 강화하며, 시민이 미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종류의 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론토 법정계획(Toronto Official Plan)은 모든 민간개발이 시행될 때 건축비의 최소 1%를 공공미술 설치에 사용하게 한다. 커뮤니티 계획가와 도시 설계가들이 공공미술을 위한 퍼센트법을 관리하고, 개발을 검토·수정·재정비를 한다. 이를 통하여 설치된 공공미술은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감상 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민과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토론토 최고위자 건축위원회(Toronto Area Chief Building Officials Committe, TACBOC)에 따르면, 2009-2010년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들의 건설 예산에서 미술품을 설치를 위해 1%가 출연되었다 <표 4-1>. 1%를 기준으로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1%미만을 적용하기도 하고, off-site로 진행되는 중·소형 프로젝트에는 1%미만을 사용하기도 한다.

토론토 공공미술위원회(Toronto Public Art Committee, TPAC)는 자원봉사 시민그룹이다. 공공미술위원회는 도시계획공무원에게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한다. 선택배심원제이며 회원은 지역사회에서 공공미술의 경험을 가진 예술가, 도시 디자이너, 건축가, 조경가, 공

공기관 대표, 미술사가, 비평가, 개발자, 변호사, 기업 대표 등이다. 2005년 시의회는 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11명으로 늘렸다. 도시계획국의 공공미술 코디네이터가 그들을 관리하며, 연간 8번의 회의를 한다.

공공미술 예산은 관리(행정), 유지기금, 예술예산으로 이루어진다. 예술예산은 전체 예산의 80%정도로, 재료, 작품제작, 수송, 설치공간조성, 표준 외 요소, 조명, 명패, 식별자, 안내책자, 기술료, 예술가 대금, 기록 작업비, 지방세와 기타 세금을 포함하거, 관리(행정)과 유지 기금에 10%씩 할애한다.

표 4-1 TACBOC 건축비용 기준

건축물 종류	TACBOC 건축비	퍼센트법에 출연
공연예술센터, 박물관, 겔러리, 법원청사	$ 3,200.00	$ 320.00
여가시설, 강의관, 시민센터, 영화관 등	2,200.00	220.00
고급호텔 등 숙박업소	2,300.00	230.00
일반호텔	1,500.00	150.00
단독주택, 아파트 건물	1,400.00	140.00
타운하우스	1,000.00	100.00
은행, 공공건축물, 폐쇄형 쇼핑몰(enclosed mall)	2,000.00	200.00
업무용 건축지구, 백화점	1,300.00	130.00
상업지역, 상점, 전시관, 슈퍼마켓, 아울렛	1,000.00	100.00

* 자료: Toronto City Planning(2010) p.14 내용 재구성

민간개발 시, 퍼센트법에 의하여 작품을 설치하고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법은 'On-site', 'Off-site', 두 방법의 조합이 있다<그림 4-6>.

첫 번째로, 'On-site'는 개발 부지나 그곳에 인접한 곳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와 유사하다. 어떤 경우에, 개발자는 시유 시설이 될 수 있는 open space나 공원 설계의 한 부분으로 미술작품을 주문한다. 'On-site'로 공공미술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 공공미술계획이 필요하다. 도시계획담당공무원과 토론토 공공미술위원회는 개발자가 대상지에 적절한 공공 미술을 선택하게 돕고, 토론토

공공미술위원회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정책 등의 토론토시 계획을 자문한다. 이 방법은 예산과 프로젝트 일정, 미술품과 예술가 선택을 위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방법이라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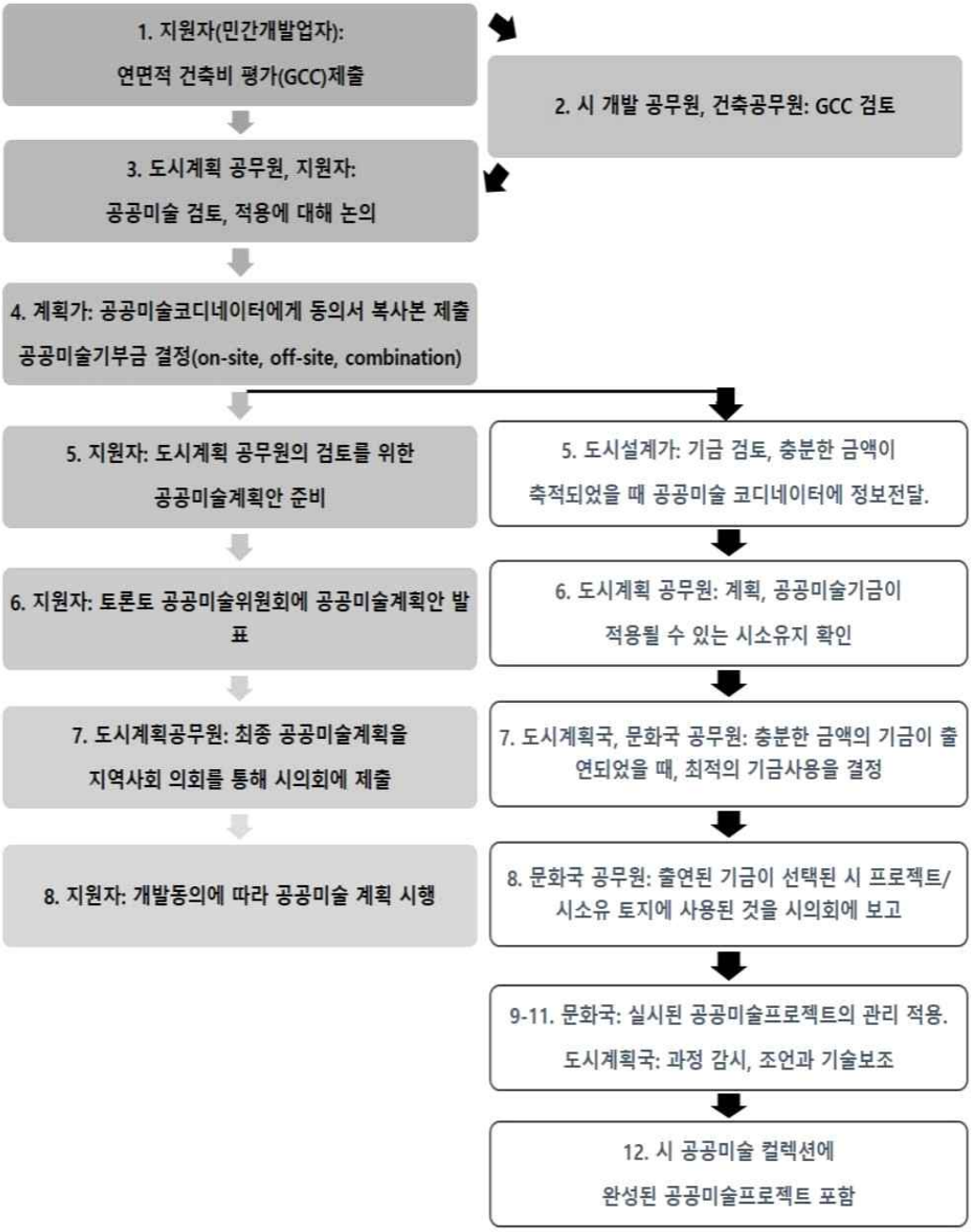

그림 4-6 토론토 On-site, Off-site 기금 허가 과정
* 자료: Toronto City Planning(2010) p.17 내용 재구성

두 번째로, 'Off-site'를 통해 출연된 기금은 토론토시의 공공미술 보존기금(Public Art Reserve Fund)에 모금되고, 구(ward)의 도시 계획(City-initiative)을 위해 공공 미술을 주문하는 다른 유사 기부금들과 함께 사용된다. 시에서 주문한 공공미술은 토론토 문화국(Toronto Culture)이 진행한다. 토론토시는 도시의 문화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토론토 문화 서비스와 문화예술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박물관, 유적지, 공연 및 시각 예술 센터를 운영·관리한다. 또한, 문화 활동 및 개별 아티스트를 위한 재정 지원, 민간 및 공공 개발에 고무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및 서비스 시설로의 접근성 증대, 지역사회의 예술 단체에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On-site' 와 'Off-site'의 조합이 있다. 이 방법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대상지나 공공 소유지(또는 그곳에 인접한 곳)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Off-site에 의해 공공미술 보존기금에 출연된 기금의 일부를 이미 설치되어있는 공공미술에 사용하기도 한다.

토론토시 퍼센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정부 건물에 미술작품을 의무설치하며, 민간개발에 있어서 기금운용방안으로 'On-site' 와 'Off-site'가 있고 이 둘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On-site'는 개발 부지나 그곳에 인접한 곳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이며, 'Off-site'를 통해 출연된 기금은 토론토시의 공공미술 보존기금(Public Art Reserve Fund)에 모금되고, 구(ward)의 도시 계획(City-initiative)을 위해 공공미술을 주문하는 다른 유사 기부금들과 함께 사용된다. 둘째, 건축비의 최소 1%를 적용한다. 셋째, 공공미술위원회는 도시계획공무원에게 프로젝트와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한다. 넷째, 도시계획국에 공공미술 코디네이터가 공공미술위원회를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작품설치비 외에, 관리(행정), 유지 기금도 포함된다.

5. 호주 시드니[29]

호주정부는 건축 프로젝트와 공공공간에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는 도시경관에 기여한다. 최근 호주의 많은 도시들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도시의 다양한 문화를 결합하는 수단으로 공공미술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시드니시는 400만 달러를 사용하여 녹색광장(Green Square)을 조성하는 등 공공미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주(New South Wales)의 주도이자,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시드니를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시드니의 공공미술 정책은 창의성, 지식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창조하고 도시의 옥외 기념물·기념비·예술작품들을 사용하여 시드니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공공미술을 통하여 도시 구조로 예술이 통합되며, 공공영역의 질을 높이고, 시드니시의 특성을 반영· 강조하여 도시재생에 기여한다. 이 제도는 시의회가 매입·기부·교환한 공공미술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관리와 홍보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도에서 정의하는 공공미술은 넓은 의미에서 공공에서 접근 가능한 예술작품과 활동을 말하며,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 실내에 있을 수도 있고 공공장소나 공공의 시설에 설치될 수도 있고, 공공장소와 시설물 설계에 예술가가 개념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포함된다. 새로운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도시미술(City Art)이라 하는데, 이는 도시민과 방문객의 생활과 연계된 예술작품을 말하며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 원주민 문화를 이용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주민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드니 시는 도심(Village Centre)에 새로운 공원, 커뮤니티, 문화 시설, 레크레이션 시설을 만들고, 현재 있는 공원, 도로, 시설물들을 재보수하는 수백만 달러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도심과 문화 구역의 특성을 개발하고 각 장소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공공미술을 권장한다. 또한 공동

---

29) 시드니 퍼센트법은 아래 문헌들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City of Sydney(2009) 『Public Art Strategy』, City of Sydney(2011) 『Public Art Policy』, http://www.cityartsydney.com.au (2014.6.25.접속)

체미술(Community Art)과 도시미술은 도심에 활기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치유와 어린이들의 의견 수용에 도움이 된다.

시드니에서 공공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민간개발을 시행할 때, 개발승인을 위해 영구적인 예술작품 설치가 필요하며, 민간개발업자(stakeholder)와 정부의 협력을 권장한다. 시드니 시, 다른 공공기관, 민간개발업자 등이 제안한 모든 공공미술작품은 우수성과 혁신, 작품 상태, 대상지에 대한 작품 적합성과 관련성, (다른)진행 중인 계획·환경 정책과의 일관성, 공공 안전과 대중의 공공영역에 대한 접근·사용에 대한 고려, 유지 보수 및 내구성, 유지보수에 할당된 자금 조달과 안정적인 예산운영,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물의 비 중복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공공미술본부(Public Art Units)와 도시디자인본부(City Design Units)가 개발평가부서(Development Assessment), 시 조례(City Strategy), 디자인&프로젝트 부서(Design and City Project Division)의 지원을 받는다. 도시디자인본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업무의 전략방향을 설정한다. 공공미술프로그램 매니저와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시드니시의 공공미술 전반을 이해하고 독립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공공미술자문위원(Public Art Advisory Panel)과 함께 일한다. 공공미술프로그램 매니저와 도시디자인본부장은 개발평가부서에 공공미술자문위원의 의견을 제공한다. 공공미술본부와 도시디자인본부는 공공미술 작품과 제도를 공공미술 전반적인 질적 개선과 공공미술을 위한 원칙들이 잘 적용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한, 그들은 공공미술 관련 안내 문서를 만든다.

공공미술부서, 공공미술자문위원, 시드니시의회는 도시 업무수행 평가프로그램(City's Delivery Program)에 따라 이 정책을 4년마다 검토한다. City of Sydney City Art 웹사이트에 공공미술 컬렉션을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최신 공공미술 정책, 다양한 공공미술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드니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대중과 대화하고, 도시환경에서 현대 공공미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교육한다.

시드시시 퍼센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건축물에 퍼센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의회가 매입·기부·교환한 공공미술을 평가하고, 민간개발에서는 권장한다. 여기서 공공미술이란 도시민과 방문객들의 삶과 연계된 예술작품을 말하며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고, 원주민문화를 존중한다. 둘째, 일시적인 예술프로젝트는 지역 예술가를 돕고, 도시와 공공장소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여 도시를 활성화하며, 현대미술 프로젝트와 공동체미술을 선호한다. 넷째, 공공미술프로그램 매니저를 두고, 그들은 도시디자인본부장, 공공미술자문위원들과 함께 일한다. 다섯째, 작가선정 시 공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주에 의한 자발적인 관리프로그램과 홍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은 공공미술에서의 공공의 역할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제 5 장 결론

공공미술은 시민이 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용된다. 퍼센트법은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공미술의 형태이며, 우리나라 퍼센트법인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가 2011년에 선택적으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개정 3년이 지났지만 건축주들의 기금출연이 저조하며, 기금 사용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까지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작품과 필요·부족지역에 대한 분석 없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상당수의 시민이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한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개선 효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고찰과 제도분석을 통하여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인구가 많은 지역에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미술작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설치 위치와 규모, 형태,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4개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미술과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실태, 건축물미술작품 인지도와 기여도 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첫째, 서울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도는 보통이하 수준이었고, 공공미술이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식할수록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공공미술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거주지역의 도시경관 만족도가 높을수록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건축물미술작품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2.1%였고, 문화예술 향유수준이 높을수록 건축물미술작품이 자신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건축물미술작품이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며,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미술 설치필요성을 높

게 인식할수록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경관 개선 기여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해 모금된 기금이 제도의 원취지인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세부지침을 제시한다. 기금 사용의 단위를 도출하고, 그 단위에 맞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구성, 기금 사용처 규정, 평가항목 구성, 기금에 적합한 공공미술 형태 제안, 공공미술 전문가 임용 및 교육, 공모 등 홍보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해 출연되는 기금은 개별건축물 인근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과 달리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쓰이게 되므로,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향유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Up-Lift Approach”개념을 적용하여 부족지역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면, 공공미술 향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감상자의 접근성과 감상의 용이성을 고려하지 않는 설치공간의 선정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은 작품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재료와 규모, 조명 미설치, 제목·작품설명 누락과 유지·관리 미비 등의 문제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단계에서 주민설문과 현황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부족한 지역과 충분한 지역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한 작품설치를 통하여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금 사용 행정단위를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제안한다. 현재 기금 사용 및 시행단위가 정해져있지 않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되는 것이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기금에 의해 실시된 한 번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국 공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전국 단위의 기금 사용은 현재 기금출연 저조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은 (건축주 소유의)건축

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금출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건축물 인근은 아니지만, 건축주가 속해있는 도시에 설치함으로써 거주지역의 경관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미술작품의 심의와 사후관리 의무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기금 사용의 단위를 통일한다면 공공미술의 계획·설치·관리가 편리해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례연구대상지에서 시단위로 제도를 적용하였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환경에 부합하는 작품 설치를 권장하고 시의회에서 작품을 결정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는 도시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발생하여 도시경관을 재창조하고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시의회가 관여한다. 미국의 뉴욕과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호주 시드니의 퍼센트법 적용과 북아일랜드, 시카고, 토론토 기금사용 단위는 시단위이다.

더불어 구 단위로 부족지역과 충분지역을 분석하여 부족지역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사용한다면, 일부용도 건축물밀집지역으로 편중된 현상을 해결하고 도시경관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기금 사용을 위한 세부항목 세부지침을 제안한다. 첫째, 심의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원으로 해당 도시 공공시설, 도시계획·설계 담당자, 구·커뮤니티 대표를 위촉한다. 우리나라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는 미술작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이 다수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에서는 건축계획부터 작품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두며, 뉴욕시에서는 5개 자치구의 대표와 지역사회 대표가 심의위원회에 포함된다. 시카고시 공공미술위원회는 항공국, 행정지원실, 교통국의 위원과 공공건물위원회, 공원지구 대표 등을 포함한다. 토론토시에서는 커뮤니티 계획가와 도시설계가들이 퍼센트법을 관리하고 개발을 검토·수정·재정비하게 하며, 공공미술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자문단을 두며, 구성원으로 각 구의 대표

를 위촉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지역 지사를 포함한 지역위원회를 두며, 뉴욕시의 지역사회 자문단은 다섯 자치구에서 인구비례할당에 의해 임명되어 자문자격으로 토지 이용 계획, 예산 집행, 주민 복지 등의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대변하며 구청장도 포함된다. 시카고시에서는 작품구입 시 공공미술위원회와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야하고, 자문단의 일원으로 공공건물이나 야외환경 개선 프로젝트가 시행중인 구의 청장이 선출한 한명과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한 별도의 보존 소위원회를 두어 기금에 의핸 선택된 작품 복원과 보전에 대하여 공공미술위원회에 권고한다. 각 자치구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자문단을 두어 공공미술이 설치공간과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공공미술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다.

둘째, 미술품제작·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와 행정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등 항목의 구체화를 통하여, 도시단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 건축물에 미술품은 설치하는 것과 달리, 기금사용을 통하여 공공공간에 공공미술품을 설치하거나 프로젝트를 발생할 때는 미술품구입비 외의 비용이 든다. 프랑스에서는 전체비용의 10%정도를 홍보를 위해 예치하며, 미국 시카고시에서는 20%를 유지·보수와 일반관리비로 책정한다. 캐나다 토론토시는 관리(행정)비와 유지기금을 각각 10%씩 책정하고, 예술예산(80%)에 재료, 작품제작, 수송, 설치공간조성, 표준 외 요소, 조명, 명패, 식별자, 안내책자, 기술료, 예술가대금, 기록작업비, 지방세, 기타 세금 등을 포함한다.

유지관리와 행정 등 일반관리비를 계획과정에서 책정하여 여러 주체들이 장시간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고, 작품비 내에 작품재료비와 제작비뿐만 아니라 설치공간 정비와 기타 기반요소 등도 포함해야한다. 이를 통하여 공공미술이 도시경관에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미술품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시민의 접근과 도시경관의 조화

를 강조하는 공공미술 평가가 필요하다. 예술의 범주에 속한 공공미술은 그 표현 자체가 이미 주관적이기 때문에 임의적 해석의 폭이 넓으며, 이에 심의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채점기준은 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유지·보존 등이며 작품의 가격과 예술성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북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와 뉴욕시, 토론토시, 시드니시에서는 도시재생, 도시문제에 관련된 공공미술 설치를 권장한다. 시민의 접근성과 가시성, 시민에 예술경험 제공, 지역의 고유성 반영 등을 심의 시 평가한다. 공공의 접근과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소성, 가시성과 인지성, 접근성, 적당한 규모,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적절한 설치위치 등 공간과의 조화 측면에 대한 항목을 늘려야한다. 또한 지역의 특징과 역사를 고려한 작품을 선정해야 하므로, 지역성, 역사성, 도시 내 타 계획과의 조화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기금에 의한 공공미술(프로젝트)에서 적합한 공공미술 형태를 제안하여, 시민의 예술향유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힘써야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미술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에서는 조각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예술을 공공장소에 설치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다.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을 지향하는 연구가 많지만, 민간건축주가 출연하는 기금으로 일시적이거나 활동중심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민간건축주의 기금 출연률을 저조하게 만들 것이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출연하는 것이므로, 본 제도에 의해 출연된 기금으로 일시적이거나 프로그램 중심의 공공미술을 지원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을 고집한다면 민간건축주의 기금 출연률은 현재의 저조한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프랑스의 퍼센트법은 작품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를 강조하였다. 뉴욕시의 경우정책에 작품의 소재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도시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작품을 강조하고 있다. 시카고시에서는 매체나 재료의 구애가 없고 모든 시각미술의 형태를 포

함하지만, 공공의 접근성을 고려한다. 시드니시는 일시적인 예술 프로젝트나 공동체미술을 지지하지만, 공원, 커뮤니티, 문화시설, 레크레이션 시설 건설이나 도로, 공원, 시설물을 재보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권장한다.

위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공공미술의 형태는 조각 등 정형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도시의 역사나 상황, 공공공간과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매체나 재료의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공간과 부합하는 형태·규모의 작품설치를 통하여 지역경관에 해가 되지 않는 작품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별건축물에 미술품을 설치하는 것과 달리 공공미술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므로, 그들을 조율하고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미술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문화부를 비롯한 6개 부처에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조형예술자문관을 두고 있다. 미국의 뉴욕시와 시카고시는 공공미술 코디네이터에게 계획수립을 위임하여 양질의 작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예산에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큐레이터가 있다. 토론토시 도시계획국의 공공미술코디네이터는 공공미술위원회를 관리하고, 시드니시에도 담당 큐레이터가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 공공미술 설치 전문가가 있으며, 그들은 법률과 예산책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주체들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공공미술 담당공무원과 예술분야 전문가들은 정책·이론 분야 전문성이 약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을 통솔하고 전문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공공미술 분야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가관리를 통하여, 미술, 건축, 조경, 행정, 정책,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 공공미술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모를 통해 공공미술을 선정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도별로 홍보하여야 한다.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해 아는 서울시민이 절

반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작품설치계획에 대해 공개 발표하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작가선정 시 공개심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축주에 의한 자발적인 관리프로그램과 홍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홍보를 위해 미술장식비용의 10%를 예치해두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프로젝트 진행 중이나 완료 후 각종 홍보 교육용 자료 제작과 이벤트를 기획하고, 시드니시는 주요 안내 문서를 만들어 공공미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를 감시·평가하는데 사용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해 출연된 기금을 제도의 원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을 제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4개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미술과 퍼센트법 등에 관한 인지 및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서울시 외에도,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세계 여러 국가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통하여 각국의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과 퍼센트법을 최초로 시행한 프랑스, 퍼센트법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캐나다와 호주 등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재정 및 적용에는 그 곳의 문화, 관련 정책·분야와의 관계 등과 같은 고려사항이 많으나, 본 연구는 제도의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였다. 특히, 북아일랜드, 프랑스, 미국의 뉴욕과 시카고, 호주 시드니에서는 공공건축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민간건축을 대상으로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제도의 개정과 개정 이후 기금제 적용이라는 새로운 대안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실태조사, 제도 분석, 해외 제도와 비교 등을 통하여 선행연구들보다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 용 문 헌

강명석(2012) 통영지역 공공미술과 교육적 연구: 중학교과정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완규(2012) 생활공간에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연구-2009~2010년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철근(2004) 『문화정책론』 서울: 사회교육연구회

강태희 외(1997)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강흥수(2009) 『여론조사, 과학인가 예술인가?』 파주: 리북

고토 카즈코-後藤和子 외(2004) 『문화정책학』(임상오, 옮김) 서울: 도서출판 시유시 (원서출판 2001).

공공미술추진위원회(2006) 『아트인시티 2006 보고서』

_____(2007) 『아트인시티 2007 보고서』

국가청렴위원회(2006)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혁인, 양태근, 주희엽, 이진화(2012) 건축물 미술장식품 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 문화정책논총 26(1): 127-146

김경욱, 양현미, 이영범, 전용석, 최범(2006)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문화관광부

김기평(2001) 준조세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4(6): 35-46

김도경(1995)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옥외 예술장식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도경(1996) 옥외 예술장식품 설치공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건축물 부설 예술장식품 심의대장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4(2): 99-116

김명수(2003) 『공공정책 평가론(전정증보판)』 서울: 박영사

김문석(2011) 『공공을 위한 디자인과 예술』 한국학술정보

김민영(2006) 서울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와 현황에 관한 연구: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보름(2010) 『예술과+경제가+만나는+곳 뉴욕 미술시장』 서울: 미술문화

김상근(2004) 도시공간에서의 환경조형물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1): 33-42

김새미(2011) 영국의 문화주도 재생정책: 리버풀과 뉴캐슬게이츠헤드 사례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소라(2009)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그리고 도시, 대한건축학회지 53(5): 2-15

김순분, 안동만(2005) 공동주택 외부공간의 다양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3(3): 43-55

김영규(2005)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역사와 사회 34: 151-165

김영호(2012) 공공미술과 법제: 2011년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조사, 현대미술학 논문집 16(1): 7-40

김인규(2004) 공공미술에서 공공성의 문제와 뉴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의 실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유석, 김재영, 김선주, 성정환(2008) 공공예술로서의 앰비언트 아트 연구, 한국HCI학회 2008년도 학술대회 2부: 1292-1295

김유정(2003) 공공건축의 미술장식 제도상 문제점과 대안, 문화도시문화복지 143: 86-91

김재경(2001) 도시 외부공간 공공미술 설치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정(2011) 제3회 미술정책연구 "아트 앤더 시티- 공공미술, 변화를 꿈꾸

다!", 대한민국국회
김정학(2011) 정부기금운용에 관한 연구: 기금특성 분석과 기금평가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원(2004) 공동주택단지 미술장식물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주연, 이미림, 권양숙(2010) 도시 공간에서의 인간과 공공미술의 유기적 관계 연구: 시카고 공공미술 작품 사례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5(3): 99-108
김지현(2009) 공공미술을 통한 도심 속 공공공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진아(2008) 뉴욕의 (재)개발 사업과 공공미술 (Public Art and Urban Renewal of New York City: A Case Study of Battery Park City),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12: 53-106
김창화(2012) 기금 여유자금 운용 효율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창배(2007) 『우리나라 준조세 규모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정(2011)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고찰: 부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2): 276-286
김현주(2008) 문화도시 전략에 있어 공공미술 활성화에 관한 연구: 안양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남기범, 남미영(2013) 공공미술의 공공성과 주체간 관계의 특성: <황금시장 황금시대> 공공미술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1): 118-134
노권찬, 이길순 (2006) 테마파크 환경디자인 기초요소 연구: 국내 조각공원을 중심으로, 한국기초조형학회 7(1): 243-250

류다혜, 이규백(2011) 현대공간에 나타나는 인터랙티브 디자인의 특성: 어포던스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2(5): 165-173

류선정(2009) 우리나라 공공미술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_____(2012) 우리나라와 호주 공공미술 제도 비교 연구: 서울특별시와 호주의 North Sydney Council, City of Holroyd를 대상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 155-164

류선정, 안동만(2013) 대구광역시 공공조형물에 대한 평가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1): 43-52

멜컴 마일즈-Malcolm Miles(2000)『미술, 공간, 도시-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박삼철, 옮김) 서울: 학고재 (원서출판 1997)

문정언(2005)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미술연구: 공동체미술 “Community Art"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문화관광부(2005) 『공청회자료집: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개선 방안』

_____(2006)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규제 개혁과제 시행 통보』

_____(2006)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문화비전 2000 추진위원회(2001) 『새로운 예술론 21세기 한국문화의 전망』 서울: 나남출판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_____(2013)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_____(2013) 『성과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체육부(1993) 『전국 환경조형물현황』

문희숙(2012)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에 따른 환경조형물 연구: 서울시 조례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15(32): 65-72

박신자(2009)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문화 공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9(1):

363-372
박삼철(2006) 『왜 공공미술인가』 서울: 학고재
박영옥, 신지은, 이부일, 황현식, 이석훈(2012)『SPSS를 활용한 통계자료분석』서울: 경문사
박찬경(2001) '공공미술' 개념과 제도 도입을 위해, 문화도시문화복지 110: 16-19
박태희(2001) 환경조형물의 시각적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태욱, 최유식(2009) 도시 공공공간에서의 아트마케팅 적용에 관한 연구: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한국기초조형학회 9(2): 891-901
배경주(2010) 도시마케팅을 위한 대구시 환경조형물 분석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1(3): 183-193
서주환, 박태희, 허준(2004) 도시가로 경관에 있어 환경조형물의 이미지 및 시각적 선호도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2(1): 57-68
성완경(1999) 『민중미술 모더니즘 시각문화 새로운 현대를 위한 성찰: 성완경의 미술비평』 서울: 열화당
손은하, 신나경(2010) 공공미술의 전개와 로컬공간의 재생, 기초조형학연구 11(4): 113-143
손현모(2006) 공동주택단지의 건축물미술장식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시장경제연구원(2003) 『금융성 기금제도의 개선 방안』
신운경 외(2008) 공동주택단지에서의 건축물 미술장식에 대한 연구 – 서울시 공동주택 미술장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24(5): 4-8
신혜경(2010) 다이엘 뷔렝(D. Buren)의 탈역사주의와 공간의 재구조화: 'in situ'작업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2: 557
안은경(2006) 환경조형물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안해균(1997) 『정책학원론』 서울: 다산출판사
안현경(2010) 공공미술의 공공성 이해와 문화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4(2): 391
양병화(2013) 『심리학 및 사회과학을 위한 조사와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양지윤(2006) 후기 디지털 시대 서울 공공미술 현황과 대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양현미(2004) 공공미술의 제도적 기반: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을 중심으로, 연대미술사학회 16: 177-202.
양현미, 김성규(2010)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에 있어서 선택적 기금제 도입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24: 135-160
양효석(2009) 공공미술 출연 기금의 운영 방안, 미술평단 94: 59-69
여수빈(2007) 도시 재생 역할로서 공공예술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여화선(2006) 환경도자 조형물의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재 환경조형물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2(1): 205-216
예술경영지원센터(2008)『소외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 평가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용호성(2010) 민간공연예술단체의 경영환경 변화와 재원조성, 예술경영연구 17: 5-30
우정민(2006) 주상복합 아파트 외부 공간 조형물에 대한 이미지 및 시각적 선호도에 관한 연구: 분당 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우창빈(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318
윤기환(2005) 환경조형물 평가시스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수재(2010) 『기금운용평가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이경진(2011) 도시재생에서 공공미술의 역할: 맬컴 마일즈(Malcolm Miles)의 논의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기창(2002) 미술장식제도에 따른 환경조각 연구: 포스코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대우(1997) 『세계의 도시 조경 답사기』 서울: 시간과공간사
이상하(1995) 환경조각이 도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소희, 김민정(2000) 청소년 문화복지지표체계개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 61-83
이순성(2010),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한·중 비교연구: 서울 문래동 예술촌과 북경 798따산즈예술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용덕(1999) 국내건축물미술장식제도에 따른 환경조각의 실태연구: 서울시 도시환경조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유미(2006) 서울시 지하철 공공미술 현황 및 특징 연구: 부조 및 입체 조형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은정, 류숙희(2013) 공공디자인으로서 장소-특정성 공공미술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4(2): 301
이재복(2000) 환경조형물의 변천과 비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종익, 강창구(2004)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이지연(2007) 앰비언트 아트를 통한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8(2): 395-403

이태호(2010)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 미술평단 98: 102-123

이흥재(2005) 『문화예술정책론』 서울: 박영사

이흥재(2006) 『문화정책』 서울: 논형

임근혜(2009) 『창조의 제국 현대 현대미술의 센세이션』서울: 지안출판사

임성훈(2008) 미술과 공공성: 공공미술에 대한 미학적 고찰, 현대미술학논문집 12: 107-135

전병성(2001) 학교의 환경조형물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전여진(2001) 현대건축과 현대조각의 조형적 특성 및 동질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_____(2009) 건축물 미술장식품 실태분석을 통한 건축적 평가요인 선정 및 타당성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전여진, 유지우(2012) 도시가로경관개선을 위한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4(1): 151-158

전영옥(2004) 『어메니티가 도시경쟁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윤수(2006) 도시건축물과 관련된 공공미술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철현(2008)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서울: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정철현, 박윤조(2011) 우리나라 공공미술정책을 위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50(2): 81-113

정철현, 안경화(2011)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미술정책의 성공요인에 관한연구: 2008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2(1): 91-105

정홍익(2001) 문화정책의 정치경제학과 자기성찰적 비판: 정부와 문화예술의 관계, 한국문화정책학회 2001년도 학술심포지움 '한국 문예진흥정책의 평가와 전망' pp. 8-14

정희선, 김희순(2011)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 재생과 창조성의 배양: 서울시의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중심으로, 국토리지학회지 45(2): 279-293

조경진(2011)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도시환경과 공공미술 심포지움 '지역발전과 도시문화환경 향상을 위한 공공미술의 비전과 전략' pp.73-8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영(2004) 정부 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주지완(2011)『뉴욕의 현대미술이야기』서울: 문화세계사

차미경, 표순희(2008) 공공도서관 향유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4): 332

최강림(2013)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한 구도심 상업가로 도시재생, 디자인학연구 26(1): 231-265

최동식(2010) 기금평가시스템이 정부기금 운용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민경, 황희연, 권정주(2012) 예술매개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주거공동체 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청주시 사직2동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3(4): 69-76

최운용(2014) 문화자본이 문화향유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기록학회지 32: 221-35

최재정(2010) 공공미술의 경관성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진영(2009) 공공미술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2007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태만(2009)『한국시각예술의 과제와 전망』서울: 다할미디어

최태만(2009) 한국전쟁과 미술: 선전 · 경험 · 기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형선, 윤상훈, 서은영, 원제무(2013) 협력적 계획을 적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주체별 사회자본 형성 영향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부산시 감천동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한국토계획학회지 48(1): 5-21

하민지(2014) 지방정부 정책변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유형별 예산변동에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7)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9)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_____(2010) 『건축물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

_____(2012)a 『공공미술 시범사업 추진전략 및 평가방안 연구』

_____(2012)b 『도시공원 예술로 토론집』

_____(2013) 『2012 공공미술 연례 보고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편집부(2002) 2002 대통령 선거 후보자 문화정책 평가 보고서, 민족예술 89: 98-103

한승욱(2013)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공미술사업의 인식에 관한 연구: 강원도 정선군 아트인빌리지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현근(2006) 한국의 기금(FUND)운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전통상학연

구 20(2): 51-72

황선일(2004) 건축물미술장식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황윤원, 기노진(1999) 우리나라 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행정논총 37(2): 223-254

Ahn, Tong-Mahn; Ryu, Sun-Jung; Lee, Jae-Won; Kim, Bo-ram; Yoon, Ho-Seon Son, Seung-Woo; Lee, Na-rae Choi, Yoo Lee, Ji-Young; Kim, Hae-Ryung(2013) Up-Lift Approach" for Landscape Planning -Social Sustainability Analysis of Urban Parks-, Towards a new baseline for 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pp. 23-28

Art Council of Northern Ireland(2014) Art form and specialist area policy 2013-2018: Public art

Becker, Fres(1998) The WPA Federal Art Project. New York City; A Reminiscence, Proquest Direct Complete Vol. 39 No. 10 pp. 74-100

Cartiere, Carmeron, Shellu willis(2008) 『The Practice of Public Art』 London: Routledge

City of Sydney(2009) Public Art Strategy

_____(2011) Public Art Policy

Easton, David(1965) 『A System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Willy

Finkelpearl, Tom(2001) 『Dialogues in Public Art』 Cambridge: MIT Press

Fleming, Sibley(2005) Local governments get 'hip' to public art, American city&country 120(6): 8

G□rin, Annie, James S. McLean(2009) 『Public Art in Canada: Critical Perspectiv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Scholarly Publishing Division

Gillian, Mimmack, Gary Manas, Denny Meyer(2001) 『Introductory Statistics for Business: The Analysis of Business Data』 Cape Town: Pearson Education South Africa p. 284

Hall, Tim, Iain Robertson(2001) Public Art and Urban Regeneration: Advocacy, claims and critical debates, Landscape Research 26(1): 5-26

Hall, Till, Chereen Smith(2004) Public art in the City: Meaning, Values, Attitudes and Roles, Advances in Art, Urban Future 4: 175-176

Hamilton, Juliet, Leslie Forsyth, Daniel De Iongh(2001) Public Art: A Local Authority Perspective, Journal of Urban Design 6(3): 283-296

Heartney, Eleanor, Adam Gopnik(2005) 『City Art New York's Percent For Art Program』 New York: Merrell

Keniger, Michael(2006) Art Built-in Policy Evaluation for Queensland Government, Arts Queensland

Knight, Cher Krause(2008) 『Public Art: theory, practice and populism』 Oxford: Blackwell Publishing

Krauss, Rosalind(1979)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The Art of Art History: A Critical Anthology』 New York: Oxford Press

Kreivyte, Laima(2004) Going Public: Strategies of Intervention in Lithuania, Advances in Art, Urban Future 4: 121-131

Kwon, Miwon(2004) 『One Place After Another: Site-Specific Art and Locational Identity Site-Specific Art and Locational Identity』 Cambridge: MIT Press

McCarthy, John(2002) Regeneration of Cultural Quarters: Public Art for Place Image or Place Identity?, Journal of Urban Design 11(2): 243-262

Miles, Malcolm(1997) 『Art, Space and the City: Public Art and Urban Futures』 London: Routledge

_____(2000) Public Art, urban space and democracy, Urban Design (Quarterly) 76 Autumn: Public Art

Minty, Zayd(2006) Post-apartheid Public Art in Cape Town: Symbolic Reparations and Public Space, Urban Studies 43(2): 421-440

Mohatt, Nathaniel, Jonathan Singer, Arthur Evans, Samantha Matlin, Jane Golden, Cathy Harris, James Burns, Catherine Siciliano, Guy Kiernan, Margaret Pelleritti, Jacob Tebes(2013) A Community's Response to Suicide Through Public Art: Stakeholder Perspectives from the Finding the Light Within Projec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 52(1): 197-209

Mustaffa, Muhizam(2009) Public Art in the Federal Territory of Putrajaya: Questions of Value and Role, Wacana Seni Journal of Arts Discourse 8: 69-96

Nachimias, David(1979) 『Public Policy Evaluation: Approached and Methods』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Nathaniel V.(2013) A Community's Response to Suicide Through

Public Art: Stakeholder Perspectives from the Finding the Light Within Project, Am J Community Psychol 52: 197-209

Patti, Rino J.(2008) 『The Handbook of Human Services Management』 New York: Sage Publications

Pollock, Venda Louise, Ronan Paddison(2010) Embedding Public Art: Practice, Policy and Problems, Journal of Urban Design 15(3): 335-356

Radbourne, Jennifer, Hilary Glow, Katya Johanson(2010) Measuring the intrinsic benefits of arts attendance, Cultural Trends 19(4): 307-324

Rubin, Allen(2012) 『Statistics for Evidence-Based Practice and Evaluation (Research, Statistics, & Program Evaluation)』 Boston: Cengage Learning p. 140

Senie, Harriet, Sally Webster(1989) Critical Issues in Public Art, Art Journal 48(4): 237

Sep□nmaa, Yrj□(2002) The Two Aesthetic Culture: The Great Analogy of Art and the Environment, In Arnold Berleant 『The Environment and the Arts; Perspectives on Art and Environment』(pp. 39-46). Hants: Ashgate

Smith, Royce W.(2007) Cultural Development? Cultural Unilateralism? an Analysis of Contemporary Festival and Biennale Programs,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36(4): 259-273

Smith, Terry(2001) Public Art between Culture: The aboriginal Memorial, Aboriginality, and Nationality in Australia, Critical Inquiry 27(4): 629-661

Thompson, Catharine Ward(2002) Urban open space in the 21st centur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0(2): 59-72

Toronto City Planning(2010) Percent for Public Art Program Guidelines.

Wetenhall, John(1993) A Brief History of Percent-for-Art in America, Public Art Review 1993 F/W.

Weiss, Carol H.(1972) 『Evaluation Research: Methods of Assessing Program Effectiven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Willett, John(1967) 『Art in a City』 Liverpool: luecoat Society of Arts

Zebracki, Martin(2012) 『Public Artopia: Art in Public Space in Question』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http://www1.nyc.gov

http://www.artscouncil-ni.org/the-arts/visual-arts1/public-art

http://www.artlawgallery.com

http://www.art-public.com

http://www.artscouncil-ni.org

http://www.chicagoartistsresource.org

http:/www.cityofchicago.org

http://www.ci.chi.il.us/CultualAffairs/PublicArt/PublicArtOrdinance.html

http://www.cityartsydney.com.au

http://www.cpaf-opsac.org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Politiques-ministerielles/Le-un-pour-cent-artistique

http://www.gac.culture.gov.uk/home/index.asp

http://www.geocities.com/jlcarmichael/chicagopublicart.html

http://www.index.go.kr/

http://www.koica.go.kr

http://kostat.go.kr

http://www.law.go.kr

http://legal.seoul.go.kr/2005/law/now_law.php

http://www.moleg.go.kr

http://muralart.org

http://www.nyc.gov/dcla

http://www.nyc.gov/html/dcla/html/panyc/percent-for-art.shtml

http://www.pps.org/reference/artfunding

http://www.publicart.ie

http://www.publicart.or.kr

http://www.publicartlab.com

http://www.publicartlab-berlin.de

http://www.publicartonline.org.uk

http://www.publicartprojectsofamerica.com

http://public-art.shu.ac.uk/weblinx.html

http://rcps.egov.go.kr:8081

http://www.rijksbouwmeester.nl

http://www.smh.com.au/entertainment/art-and-design/public-art-in-sydney-comes-under-the-spotlight-20140412-36jpd.html

http://www.thecanadianencyclopedia.ca

Abstract

Building Artwork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Urban Landscape - Focused on Public Art Fund -

Sunjung Ryu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uilding Artwork Policy in Culture and Art Law is to provide artworks in public sites for the enhancing of urban landscape. This policy facilitates the increase of artworks that account for the majority of public art practices, but the benefit of these projects are questioned due to disharmony with surroundings, low artistic quality, and incompatibility with the purpose of the policy.

Optional Funding system, which was legislated in 2011 to resolve the issues of the earlier works, enables an owner of new buildings to either install art pieces in public places or provide 70% of amount of artwork execution to Art and Culture Fund. Art Council Korea announced, however, that only one public art project was funded from this system in last three years. Public art pieces that executed under policies that omitted consideration of regional civilization imbalance merely have contributed to urban landscape improvement.

Based on its survey on citizen perception of public artwork in Seoul,

this paper shows regional disparity in public artwork distribution and that some of districts in Seoul have smaller number of artworks comparing to the number of other districts with even smaller populations. Existing studies also pointed out these issues caused by the fact that earlier public artwork projects disregarded accessibility to public artworks or a visual harmony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This study proposes that public artwork funding is so allocated into local governments that the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be able to independently plan and design public artwork projects to enhance urban landscape of their regions. Employing this regional government-led approach will facilitate an efficient artwork project planning and maintenance. This policy change will also enable regional authorities to alleviate regional bias in terms of public art development by assigning funds to less civilized area of their landscape.

This study presents guidances on use of public artwork fund in a regional basis. First, public art project committees and advisory panel should be composed of local experts such as public facility managers, urban landscape planners or constructors, or community representatives. Second, the purpose for which resources in a fund can be spend should specified. For instance, the fund can be spent on not only artwork production and installation, but also administrative tasks such as artworks maintenance. Third, artwork accessibility and visual balance with environment should be prioritized over artistic quality. Forth, local government should use judgement criteria proposed in this paper for the selecting of appropriate project to be supported by public artwork funds. Fifth, local government should employ public art professional who can communicate with and provide

expertise to stakeholder groups in the matter of public art of their regions. At last, regional government is required to host public art design competitions, and utilize these to select winner projects and attract community attention.

This study addresses shortcoming of existing funding system for public decoration and challenges of applying Optional Funding system into local governments in Korea. To cope with these difficulties, this paper propose specific changes to be made to extend social and economical impact of public art installation. The work in this paper builds on comparison among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policy analysis, questionnaire of public and experts, policies at home and abroad and reflects comments from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dustry fields.

Keywords : Public Art (Policy), Building Artwork (Policy), Public Art Fund, Percent for Art

Student Number : 2009-31169

▌부록 1.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와 건축물미술작품 인지도 조사 설문지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와 건축물미술작품 인지도 조사

1. **중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_____(**중구** 아니면 면접 중단)
2. 성별 ____남__
3.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_____세 (만 19세미만 면접 중단)
4. 선생님 댁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보너스 포함)? 만원

"공공미술"이란 **일상생활** 중 **야외공간**에서 **무료**로 향유할 수 있는
조각, 공예, 벽화 등 예술작품과
분수대, 벽천, 건축물의 일부 중 미술품이라 말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말합니다.
※ 실내감상활동 제외 (전시회·박물관 관람,
음악·무용·연극·뮤지컬·오페라·민속공연·대중가요 콘서트 감상, 영화 감상 등 제외)

※ 문화예술과 공공미술 향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일상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 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공공미술**이 선생님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 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거주지역의 **도시경관**의 **실태**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 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거주지역의 **도시경관**을 고려할 때, **공공미술**의 **설치**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 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5.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6,7번 응답할 필요 없음)					
6. **건축물미술작품**이 선생님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 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건축물미술작품**이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 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부록 2. 퍼센트법(건축물미술작품 제도, Percent for Art) 비교표

	대한민국(서울)	프랑스	뉴욕(미국)	시카고(미국)	토론토(캐나다)	시드니(호주)
제도의 목적	창작기회 확대로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삭막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 예술적 목적(전통 상기, 여러 분야의 예술 활동 통합) - 교육적 목적(예술 감상기회 부여) - 경제적 목적(예술가 경제활동 보장)	- 예술가 참여 - 시민의 예술향유 - 지역사회 건축물의 질 향상	공공건물과 환경 개선	- 공공영역의 질 향상, 도시디자인강화 - 시민 예술향유 기회 제공	- 창의성, 지식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창조 - 시드니시 정체성 형성
설치 대상	- 공동주택(기숙사,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연면적 1만㎡이상	공공건물: 공공기관, 국방부처, 학교(산업 상업시설, 일부 국방 부처, 공공기관의 인테리어 제외, 의료 건강관련 공공건축물 제외) 부지 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건축·재건축시 공공건물이나 공공공간(학교, 공원, 정수 처리장, 정거장, 산책로, 도서관, 보육시설)에 미술작품 설치	공고건물의 건설 ·개조	민간건축: 공연예술센터, 박물관, 겔러리, 법원청사, 여가시설, 강의관, 시민센터, 영화관, 호텔 등 숙박업소, 단독주택, 아파트, 타운 하우스, 은행, 공공건축물, 쇼핑몰, 업무용 건축지구, 백화점, 상업지역, 전시관 등	- 공공건축물(공원, 커뮤니티, 문화시설, 레크레이션 시설, 도로 등) - 민간개발일 때 권장
설치 비용	- 시·군: 건축비용의 5~7/1000 - 그 외 지역: 연면적 1~2만㎡ (7/1000), 연면적 2만㎡ 초과(2만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공공건물: 건축비1% 주거용 건물: 0.5% -€2,550,000~6,300,000: 25,500+최대 추가금12,500(38,000) -€6,300,000~12,700,000: 38,000+최대	- 건축비용이 $20,000,000이하일 때 1% -초과 시, 초과비용의 0.5% 적용 - $400,000 초과할 수 없음	건축비의 1.33%를 공공미술 프로그램 기금에 예치	1%(대형 프로젝트일 때 1% 미만 적용) *기금(off- site)중 소형프로젝트일 때 1% 미만	각 사업마다 다름

	7/1000+2만 초과하는 건축비용의 5/1000) * 문화예술기금 출연: 위의 70/100	추가금13,000(51,000) - ₹12,700,000이상: 51,000+최대 추가금 13,000(64,000)				
작품 유형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회화, 조각, 스트리트 퍼니처, 조명, 새로운 미디어, 비디오, 디자인, 그래픽, 사운드 디자인, 플랜트 디자인 등	회화, 모자이크, 유리, 섬유, 조각, 기반 시설이나 건축물에 통합된 작품	- 모든 형태의 시각미술 - 위탁·선물 받았거나 시카고시가 구입한 것	- 장소- 특정적 미술 - 대형프로젝트: 다른 공공시설 포함 - 대중이 접근 가능한 형태	- 도시민과 방문객의 삶과 연계된 예술작품 - 일시적인 현대미술 - 공동체 미술
작가 선정	-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제도나 계약서에 미술품제작자의 권한・의무에 관한 내용 없음	- 건축주가 예술위원회와 협의 - 예술위원회: 건축가, 건물사용자, 지역문화 담당 이사, 예술전문가 등	예술위원회에서 사전검토와 인터뷰 후 선택	공공미술위원회(자문위원회가 권고함.)	토론토 공공미술위원회	공공미술본부
설치 절차	- 건축주: 시·도지사에게 미술작품 감정·평가를 신청 - 시·도지사: 감정·평가하여 결과통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미술작품 설치 확인 -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 건축가: 미술계획 수립 - 건축주나 지역위원회: 30000유로 미만일 때 직접구입, 이상일 때 지역위원회가 심사 - 건축가와 미술가의 계약에 의해 제작·설치, 유지·관리 포함	- 공공건축물 건축·재건축 시 예술작품비 할당 - 심의위원회: 예술가추천, 작품의 부지 선정, (예술위원회: 예술가선정) - 자문단: 주민의견반영 - 예술가: 작품설치	- 공공건물 건설·개조 시 기금에 예치 - 위원회: 예산집행 - 문화국: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와 자문위원회와 협의 후 작품 구입, 정책절차 개발	- 지원자: 건축비 평가 제출 - 도시계획 공무원, 지원자: 검토·적용 논의 - 계획가: 사용방법 결정(On/Off- site) 1.On- site: - 지원자: 공공미술계획안 - 공무원: 최종 계획 의회에 제출 - 지원자: 개발동의에	- 공공미술본부, 도시디자인본부: 개발평가부서, 시 조례, 디자인과 프로젝트 부서의 지원을 받아 모니터링하고 시행 - 도시디자인본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략방향 설정 - 공공미술프로그램 매니저, 도시디자인본부장:

	있음), 가산 10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 *기금출연 - 건축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시·도지사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 출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서 발급, 시·도지사에게 통보				따라 계획 시행 2. Off- site(기금): - 도시설계가: 기금 검토, 코디네이터에 정보전달 - 도시계획 공무원: 계획, 대상지확인(구 단위) - 도시계획/문화국 공무원: 기금사용 결정, 과정감시, 기술보조 등 - 문화국 공무원: 시의회에 보고, 적용	공공미술자문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 - 시의회 의원 5인+시의장에 추천한 3인+당연직 3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구성(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가능)	지역위원회: 지역 지사, 대학의 경우 교육 이사, 문화청 이사, 외부 구성원 등	뉴욕시장, 예술위원회나 구청장, 지역사회 자문단(반드시 한명이상 예술가), 시각 예술 전문가, 큐레이터, 이사, 비영리 갤러리 직원, 시각예술 관리자, 미술비평가, 작가, 미술사, 공공미술 전문가 등	문화국, 항공국, 행정지원실, 계획 및 개발국, 교통국 위원과 시카고시의원, 공공건물위원회 이사, 문화국 자문위원, 공원지구 대표, 교통국 대표, 경관위원, 공립학교 대표, 지역 예술가, 박물관 큐레이터나 디렉터, 예술후원자, 학술위원 등	예술가, 도시 디자이너, 건축가, 조경가, 공공기관 대표, 미술사가, 비평가, 개발자, 변호사, 기업대표 등	
심의	- 미술작품 가격,					우수성과 혁신,

기준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환경과의 친화성, 설치 위치의 적절성), 접근성,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 - 평균70점 이상 - 공모 가산 10점 (공모,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음)					작품상태, 대상지에 대한 적합성·관련성, (다른)계획·환경 정책과의 일관성, 공공안전과 대중의 공공영역에 대한 접근·사용에 대한 고려, 유지 보수 및 내구성, 자금조달과 안정적인 예산운영, 동일·유사품 비 중복
사후관리	- 건축주: 원상회복 - 시장: 매년 1회 이상 조사, 현장확인 또는 건축주의 신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원상복구, 철거 또는 변경 시 심의 - 구청장: 훼손·망실·분실, 용도 변경 시 조치. 10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	- 건축주: 작품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대장을 만들어야함 - 예술가: 계약에 유지보수에 관한 항목 있음		- 기금의 20%이하 유지·보수와 일반관리에 사용 - 보존분과위원회	- 예산의 10%	- 공공미술프로그램매니저가 관리 - 공공미술부서, 공공미술자문위원, 시드니시의회: 4년마다 정책검토
기타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예치하는 경우도 있음	자문단: 자치구 대표	자문위원회: 총감독, 해당부서, 건축가, 예술단체, 지역사회, 구청장 위임자	공공미술 코디네이터: 도시계획국, 공공미술위원회 관리	공공미술프로그램 메니저